

도 직접민주제도를 대의민주주의에 수용할 것인지 여부는 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그리고 국민과 정치지도자의 정치의식수준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직접민주제도의 대의민주주의에의 수용의 타당성

대의제의 기능저하 내지 폐단이 있더라도 직접민주제로 대체될 수 없고, 단지 대의제의 기본원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직접민주제도를 도입하여 대의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는 있다. 사실 대의제에서는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이 국민의 의사와 유리될 수 있고, 직접민주제도를 철저히 배제하고 대의원리에 입각하여 통치구조를 마련하게 되면 경험적 국민의사를 직접 그대로 국가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되어 국민의 政治的無力化와 政治的無關心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비록 대의민주주의가 현대 다원적 대중사회에서 국민주권의 규범적 의미를 실현하는 가장 적절한 통치형태원리이지만, 현대의 대다수 헌법국가는 대의민주주의를 통치형태원리로 수용하는데 있어서 대의기관으로 하여금 추정적 국민의사를 경험적 국민의사보다 존중하도록 요구하면서도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경험적 국민의사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⁶²⁴⁾ 스위스의 직접민주제도에 관한 René A. Rhinow의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국민투표와 국민발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국민의 정치참여를 유도하여 시민들의 욕구를 결집하고 표명함으로써 의제를 설정하고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이 국민의사에 반하는 경우 직접민주제도를 통하여 이를 시정하거나 대의기관이나 정당이 간과하거나 기피하는 사항을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의기관에 대한 통제기능을 하고, 대표자나 정당이 생각하지 못한 관심과 이익을 주장함으로써 국가의사결정과정에 대표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게 하는 데 있다. 이런 점에서 직접민주제도는 오늘날 정당국가현상에서 대의기관의 대의활동과 정당을 보완하고 이를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⁶²⁵⁾ 그리고 직접민주제도는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를 결정함으로써 그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쉽게 수용되도록 하여 사안에 따른 갈등을 종식시키고 국민의 단결을 강화하며 체제를 안정시키는데 기여한다. 또한 직접민주제도를 통해 국민의 정치교육과 복잡한 정치적 문제들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게 한다.

624) 허영(주 2), 628면.

625) Rhinow(주 233), S. 207ff.; Böckenförde(주 324), Rn. 16.

그러나 이런 기능들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환경조건에 따라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역기능이 나타날 수도 있다. 특히 국민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과 대립을 일으키는 문제들은 직접민주제적 방법으로 특별히 잘 해결될 수 없다. 특히 계다가 다수결에 의한 결정이 다수결원리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여길 때 더욱 승인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⁶²⁶⁾ 국민은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대의기관처럼 국민의 심판을 의식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국민은 자신이 결정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책임감도 부족하다.⁶²⁷⁾ 또한 오늘날 과학기술시대에서 정치적 결단은 나날이 복잡화해지는데 국민투표는 그 성질상 가능한 한 단순해야 하기 때문에 현대의 다원적 산업사회를 전제로 하는 국가공동체의 의사결정방식으로는 부적합하다. 오늘날 사항강제(Sachzwang)⁶²⁸⁾에 의한 정책결정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직접민주제도를 도입하면 대의기관은 장기적인 정책이나 가장 이성적인 정책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종종 국민의 인기를 얻을 수 있거나 여론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정책을 목표로 하기 쉽다. 특히 국민의 의사는 다양하고 유동적이지만 국민의사의 실현에는 인내심이 필요한데 국민의사의 결정과 실현사이의 시간적 간극현상은 국민의 불만을 더 증폭시킬 수 있어 직접민주제도를 도입하면 대의기관의 국가의사결정에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헌정을 불안정하게 할 우려가 있다.⁶²⁹⁾ 또한 직접민주제도가 대의기관의 필요에 따라 이용되는 경우 직접민주제도는 대표자나 정당이 생각하지 못한, 시민들의 욕구를 결집하고 표명함으로써 국가의사결정과정에 대표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게 하고 대의기관에 대한 통제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기관의 독단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 쉽다. 따라서 직접민주제도를 광범위하게 도입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국민투표적 독재 내지 전제주의가 발생할 가능성 있다. 국가기관이 직접민주제도를 이용하여 국민을 박수부대로 전락시켜 대의기관의 독단적 행위를 정당화시킬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하여 국가권력의 제한성과 법기속성을 추구하는 헌법의 규범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⁶³⁰⁾ 그렇지 않으면 정치·사회집단이 당파적 견지에서 국가정책에 반대하고 다른 정치적 해결을 관철하기 위한 정치투쟁수단으로서 악용될 소지가 있어 대의기관의 지도력의 마비를 초래하기 쉽고 이로 인하여 헌법의 규범

626) Böckenförde(주 324), Rn. 16; Rhinow(주 233), S. 216.

627) Rhinow(주 233), S. 207ff.

628) 사항강제의 이론에 관한 자세한 것은 허영(주 1), 224면 참조.

629) Herzog(주 282), II, Rn. 41.

630) 허영(주 1), 647면; M. Kriele(주 4), 296-7면; Böckenförde(주 324), Rn. 16.

력을 파괴하는 무점부상태를 야기할 수 있다.⁶³¹⁾

이런 관점에서 볼 때 憲法改定에 있어서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을 국회에서 의결한 후에만 필수적으로 국민투표를 거치도록 한 현행 헌법(제130조)의 태도는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헌법에 의하여 형성되는 여러 제도와 법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바람직한 입법이지만, 대통령이 임의로 국가안위에 관한 重要政策에 대하여 국민투표를 볼일 수 있게 한 任意의 國民投票制度(제72조)는 대통령에 의하여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민투표에 불이기 전에 의회가 먼저 심의토록 하거나 헌법재판소의 합헌성심사를 거친 후에만 가능하게 하여 선동정치나 중우정치의 위험을 배제하여야 한다.⁶³²⁾ 국민투표제도는 대의기관에 의한 협상과 타협에 의한 국가의사결정이라는 복잡한 절차 대신에 시대분위기에 편승하여 집권자나 특정 정치세력의 의사를 바로 국가의사로 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정한 사안에 대한 國民發案을 인정하여야 한다. 국민발안을 인정하는 것은 개개시민이나 사회단체의 중요한 잠재적인 정치적 지위를 승인하는 것으로 대의기관의 전제를 막을 수 있고 국민의사형성과정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⁶³³⁾ 국민발안은 구체적인 법조문형태로 된 것이든 단순히 일정한 사항에 대한 입법을 요구하는 것이든 모두 가능하지만, 반드시 의회의 심사를 거쳐서 의회가 원안을 국민투표에 불이거나 수정안 내지 부결안을 국민투표에 볼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대의기관의 담당자에 대한 國民召喚은 무기속위임원칙과 임기제를 전제로 하는 경우 대의민주주의원리에 위배되지 않지만, 국민소환제 도를 인정하면 극심한 정치투쟁을 낳게 되고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⁶³⁴⁾

631) Rhinow(주 233), S. 213.

632) 전광석(주 402), 66면; 프랑스에서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에 대한 통제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변해철, “대의제의 보완과 합리화”, 「한국외국어 대학교 논문집」 제30집, (한국외국어 대학교, 1997), 218면 이하 참조.

633) Böckenförde(주 324), Rn. 5.

634) 국회의원의 당적이탈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국민소환제도를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강경근, “전국구국회의원 의석승계 미결정 위헌확인 각하결정” 「판례월보」 342호 (1999. 3), 15면) 그러나 국민소환제도는 원칙적으로 지역구의원에 대한 소환제도이어서 비례대표의원에 대한 소환제도를 마련하기 곤란하며, 당적이탈한 지역구의원사이에도 지역구의 사정에 따라 차별이 생기게 된다는 점에서 국민소환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의원의 당적이탈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의원직을 상실시키고 지역구 의원에 대해서는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비례대표의원에 대해서는 후순위자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IV. 半代表制 内지 半直接民主制(準直接民主制)라는 用語의 妥當性

이상의 검토에서 밝혀진 것처럼 대의민주주의에 직접민주제도를 수용하였다고 하여 대의민주주의원리와 직접민주주의원리가 결합한 것이 아니라 단지 직접민주제도가 제한적으로 대의민주주의에 수용된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도 국내학자 중 직접민주제도를 수용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현대적 모습을 동일성원리에 입각하는 “반직접민주주의” 또는 “준직접민주주의” 내지는 “반대표제”라는 용어⁶³⁵⁾를 사용하여 직접민주제도를 수용하고 있는 오늘날의 대의민주주의에서 국가의 의사의 ‘반은 국민이 결정하고 반은 대표기관이 결정한다.’라고 설명하는데, 이런 용어로는 대의민주주의의 발전과정과 직접민주제도를 수용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현대적 모습의 본질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으며,⁶³⁶⁾ ‘반은 국민이 결정한다’는 의미가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이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 내지는 국가의사 결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취지라면 막연히 반은 국민이 결정한다는 식의 추상적이고 막연한 설명을 하기보다는 대의민주주의의 폐단을 극복할 수 있는 직접민주제도의 수용이나 국민의 참정권이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 정당의 자유를 통한 국민의 input활동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구나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직접민주제도는 헌법개정에 대한 필요적 국민투표와 대통령이 부의하는 중요정책에 대한 임의적 국민투표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헌법상의 대의제를 위와 같은 용어로 불어야 할 정도의 질적 변화도 없다.⁶³⁷⁾ 오늘날 직접민주제도를 국가차원에서 가장 많이 수용하고 있어 소위 ‘직접민

635) 구병식·강경근(주 600), 16면, 79면; 김철수(주 14), 625면 이하, 692면; 한태연(주 14), 286, 309, 488면; 성낙인(주 14), 186면; 조병윤(주 17), 10면. 준직접정체 내지 준직접민주주의라고 표현하는 학자들은 또한 반대표제라고도 표현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보통선거제도와 직접민주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경험적 국민의사가 중요시되는 현상을 근거로 現代代議制에서는 통치자와 피치자의同一性原則이 관철된다는 견해도 있다. 박병섭(주 285), 144면 이하. 그러면서 박병섭(주 285), 144면은 “여기에서 허영교수와 정종섭교수의 대의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근대초기의 대의제에 집착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고 한다.” 평가하고 있다. 박병섭은 동일성원칙과 대의원칙이 조화될 수 없음을 간파하고 있고, 현대 대의제에서 추정적 국민의사 외에도 경험적 국민의사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許普의 주장과 대의민주주의에서 직접민주제도의 수용과 국가의사결정과정에의 국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鄭宗燮의 견해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허영(주 1), 770면 이하, 799면 이하 참조; 정종섭(주 11), 372면 이하; 정종섭(주 172), 282면 이하.

636) 허영(주 1), 800면.

637) 반대표제라는 용어는 프랑스 헌법학자 A. Esmein이 1894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보통선거제도의 확립과 그에 따른 경험적 국민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정당의 발달 및 의원의 정

주주의의 나라'라고 불리는 스위스의 통치형태를 스위스의 학자들은 직접민주제도가 수용된 대의민주제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때 F. Fleiner와 Z. Giacometti 같은 학자들이 스위스의 통치형태를 "국민표결민주주의(Referendumsdemokratie)"라고 표현하고 이것이 "순수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주장한 바 있다.⁶³⁸⁾ 그러나 스위스의 통치형태가 직접민주주의 내지는 국민표결민주주의라는 주장은 그 당시 Nazi 독일의 "지도자민주주의"(Führerdenokratie)에 대한 반작용으로 독일에 대한 체제우위를 과시하여 독일의 침략으로부터 독립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장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⁶³⁹⁾ H. Huber는 스위스 헌법에 국민투표적인 요소가 많이 수용되어 있을지라도 여전히 대의민주주의이며 이것은 단지 대의민주주의의 하나의 변종일 뿐이라고 한다.⁶⁴⁰⁾ K. Eichenberger와 René A. Rhinow도 스위스의 주와 연방에서 도입된 국민거부, 국민투표와 국민발안은 대의민주주의를 전제로 하여 기능을 하는 것이며, 직접민주제도는 의회에 의존하고 의회에 연결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따라서 직접민주제도의 도입이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한다.⁶⁴¹⁾ 오히려

당기속현상과 비례대표선거제도와 국민투표제도도입논의 등 국가의사결정과정에서 경험적 국민의사가 중요시되는 당시 대의제의 상황을 people주권론의 입장에서 종전의 순수대표제와 결부시키고 people주권론은 직접민주제와 결부시켜서 이해하는 프랑스 특유의 주권이론에 따라 대의제의 發展過程을 說明하기 위하여 등장한 용어이지만 대의제의 발전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일반적인 용어로서의 타당성은 없으며, 또한 반대표제론은 오늘날 자유민주국가의 대의제를 반대표제라고 평가하고 대의제의 허구성을 극복하였다고 함으로써 대의제의 非民主的 性格을 隱蔽시킬 우리가 있으므로 廉棄되어야 한다고 한다. 반대표제의 의미와 그 문제점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정종섭(주 172), 252면 이하 참조; 이병훈(주 240), 127면 이하 참조.

638) Fritz Fleiner, *Schweizerisches Bundesstaatsrecht*, Tübingen, 1923, 15ff., 758ff. in: Rhinow(주 233), S. 167에서 제인용; Giacometti는 스위스의 민주주의를 "국민투표 민주주의(Referendumsdemokratie)"라고 표현하면서 신임투표적(plebisitär)이라는 표현을 피하고 있다. 그는 "신임투표적"이라는 표현은 나폴레옹에서 비롯된 프랑스의 전통으로 무규범 적이고 우연에 좌우되며 작위적이고 국민의 의사사를 묻는 절차라기보다는 국민의 찬성을 유도하기 위한 국민 참여를 의미하는 것인가 때문에 스위스의 국민입법과는 다른 것이라고 하였다. Zaccaria Giacometti, "Verfassungsrecht und Verfassungspraxis in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Das autoritäre Bundesstaatsrecht", in: *Festgabe für Fritz Fleiner zum 70. Geburtstag*, (Zürich, 1937), S. 45ff.. in: Rhinow(주 233), S. 167에서 제인용.

639) Rhinow(주 233), S. 167.

640) H. Huber(주 468), S. 470.

641) K. Eichenberger(주 468), S. 97; H. Huber(주 468), S. 470; Rhinow(주 233), S. 171ff.. 스위스 직접민주제도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박남규(주 599), 40면 이하 참조.

직접민주제도의 수용에 의해서 의회가 통제되고 의회로 하여금 선거와 선거사이에도 국민의사를 지향하게 함으로써 보다 나은 대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직접민주제도들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정하고 대의기관에 의한 국민의사의 대의를 실질화하기 위한 보충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⁶⁴²⁾ 직접민주제도가 수용된 대의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융합물이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의 발전형태이다.⁶⁴³⁾ "준직접민주주의" 또는 "반(半)직접민주주의"라는 표현의 위험성은 수식어가 피수식어로, 즉 직접민주주의를 근본적인 통치형태원리로 이해하게 한다는 점에 있다.⁶⁴⁴⁾ 이런 표현은 국민주권을 지향하는 통치형태의 본질이 대의민주주의임을 숨기고 그래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통치형태의 본질을 호도할 우려가 있다. 대의민주주의에서도 동일성원칙이 관철된다는 주장이나 동일성원리에 입각한 준직접민주주의라는 주장은, 통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은 보통선거제도나 정당제도 심지어 국민소환 등 직접민주제도의 채택 등 그 어떤 조건에서도 실현될 수 없는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다. 박병섭은 라이프홀츠의 동일화이론을 빌려 동일성이론을 설명하면서 스스로도 "일정하게 조작된 초실체화과정을 거친 후에 실제에 있어서 동일하지 않은 것을 동일하게 표현하는, 하나의 정신적 개념"이라고 한다.⁶⁴⁵⁾ 대의원칙은 통치자에 의하여 결정된 국가의사가 국민의사와 다를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양자의 일치의 가능성률 높이기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권력분립제도, 선거제도 등 각종 제도와 결합하는 통치형태원리인 반면에 동일성원칙은 통치자와 피치자의 의사의 동일성을 전제로 하여 권력집중과 기속 위임원칙을 추구하는 통치형태원리이므로 대의원리와 동일성원리는 조화될 수 없는 이념을 전제로 하는 원리이다.⁶⁴⁶⁾ 따라서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는 그 기본 이념과 기본원리를 달리 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직접민주제도가 수용된 대의민주주의는 단지 '직접민주제도가 수용된 대의민주주의'나 '대의민주주의의 변형 내지 변종'이라고 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법재판소도 기탁금사건에서 오늘날 선진국의 현대적 대표제를 '반대표제' '반직접제'라는 용어를 사용하

642) K. Eichenberger(주 468), S. 111.

643) 구병선·강경근(주 600), 16면. 그러면서도 준직접정체나 반직접정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구태여 준직접정체나 반직접정체라고 하여 국민주권을 지향하는 통치형태의 본질이 대의민주주의임을 숨기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644) Rhinow(주 233), S. 200.

645) 박병섭(주 285), 142면.

646) 정종섭(주 172), 128면 이하 참조.

여 평가하고 있는데⁶⁴⁷⁾ 이론적으로 직접민주주의이론과 대의민주주의이론은 그 기본이념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통치구조원리를 달리 하므로 양자를 구별하는 것이 옳다. 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참정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헌법재판소의 기본 취지는 타당하나, 헌법을 해석하여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주권을 지향하는 통치형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용어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오늘날의 대의제를 '반대표제' '반직접제'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옳다.⁶⁴⁸⁾

第 5 節 結 語

정치공동체에서의 의사결정의 실제 모습은 '소수'의 행동과 이에 대한 '다수'의 숭인 내지 거부의 관계로 항상 나타난다. Carl Schmitt가 지적한 것처럼 국민투표로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에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통치구조를 형성·유지할 수 없다. 통치구조는 어떤 상황에서도 공동체의 법적 평화를 확립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한의 독점과 그 환월을 위한 제도 즉 통일적 지배권을 확립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지도적이고 독자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대의기관과 국민의사를 알아내는 대표자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대의기관의 존재 내지 대의기관의 독자적 의사결정권한을 부정하는 직접민주주의는 정치공동체의統一的支配權의確立이라는 주권성의 요청에 부응할 수 없고, 또한 직접민주주의에서는 국민에 의해서 직접 내려진 정치적 결정을 절대시하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는 궁극적으로 전체주의 내지 다수의 독재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통일적 지배권의 확립을 위한統治權의制限이라는 주권성의 요청에도 부응할 수 없다. 대의기관은 통치구조를 형성·유지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며 더 나아가 대의기관의 존재는 국민주권의 통치질서가 민주적으로 운용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그러므로 직접민주주의를 현실에서 실현가능한 통치형태원리로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647) 원제결 1989. 9. 8. 88헌가6. 헌판집 제1권, 225면.

648) 같은 취지: 정종섭(주 172), 252면 이하; 이승우,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제34조의 위헌 결정에 관한 평석-헌법재판소 1989년 9월 8일 선고 88 헌가 6" 「人權과·正義」(1989. 12), 74면; 유사한 취지: 이병훈(주 240), 141면 이하는 반대표제나 반직접제는 근대국가의 구조변경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토대의 발전, 정치이념의 변화 등 잡다한 요인들이 대표제라는 단일한 개념 속에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정치제도를 설명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개념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이화여자대학교

2000학년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마르크스의 자유주의 비판에 대한 연구

: '생산'페러다임과 '정치'이념의 종합을 위하여

마르크스의 자유주의 비판에 대한 연구

: '생산'페러다임과 '정치'이념의 종합을 위하여

이 論文을 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1년 1월

政治外交學科

박 주 원

2001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政治外交學科 박 주 원

'정당한 정치공동체'로서 새롭게 회복하고자 한 시도였다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에게서 제안된 새로운 정치의 상이 하나의 보편적 공동체나 연합체적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정치'의 구체적 원리는 무엇이며, 그 정치질서의 정당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다음에서는 구체적인 자유주의의 정치원리로 제시되었던 대의제 민주주의 정치원리를 비판하는 가운데 그에게서 제시되는 새로운 사회의 정치원리와 그 정치질서의 정당한 근거에 대해 살펴보자 한다.

3. 자유주의 정치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

(1)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비판

앞서의 검토에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자유주의적 '정치'이념에 대한 그의 비판은 그것이 단지 사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서의 정치, 따라서 사회를 통제하는 조직화된 힘으로서의 정치, 통치권력으로서의 정치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인간의 실제 사회적 삶과 분리된 정치적 형태를 한정된 것으로서 비판했던 것이며, 따라서 그에게서 궁극적인 '정치'의 모습은 인간의 사회적 삶의 내용이 하나의 정치적 질서로 표현되는 그러한 것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때문에 '인민의 지배'를 뜻하는 민주주의의 문제는 그의 정치관에 있어서 근본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정치'를 하나의 객관적 실체로 파악하기보다는 인간 스스로에게 내재된 사회성을 실현시킴으로써 형성되는 자연스런 질서로 이해하고 있었던 그에게, 민주주의 정치를 실현하는 문제는 단순한 특정 정치 형태나 정치적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인 인간 능력의 발전과 육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에게 '민주주의'란 정치의 주체로서 인간의 사회적 본성을 구현하는 질서로서 '정당한 정치'이념과 동일한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마르크스가 인간을 본질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며 따라서 인간성의 발전이 반드시 그들 간의 사회적 교류를 정당한 것으로 만드는데서 찾았다는 앞서의 논지를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그의 논의에서 민주주의의 문제가 대체로 1841년 라인신문의 논설에서 1843년까지 하니의 보편적 정치원리로 논의되고 있는 까닭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부분적으로 그것은 군주제를 채택하고 있었던 프로이센에서 민주주의가 상대적으로 보편적인

원리였다는 현실적 이유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마르크스가 전정한 의미에서의 민주주의를 근본적인 정치원리와 동일하게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는 이후 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의한다. 이는 그의 비판이 현실에서 민주주의의 자유주의적 형태인 대의제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맥락에서 언급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볼 때 분명해진다. 즉 그에게서 비판되는 민주주의란 현실에서 민주주의의 근대 자유주의적 형태로 나타난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마르크스는 1843년 「해설 법철학 비판」에서 해결이 언급했던 입법권으로서의 의회와 그 이외의 행정, 군주제를 분석하면서, 정치적 권리의 위임과 그 위임된 권리의 집행을 근대의 현실적인 정치 매카니즘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는 근대에 와서 정치적 법적 영역의 평등한 권리의 보장은 선거에 참여하여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위임하는 '보통 선거권'의 평등한 권리로 나타났으며, 정치제도는 선거에 의해 권리가 위임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로 나타났다고 본다. 그러한 점에서 그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치원리를 근대 자유주의의 구체적인 정치원리로 파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원리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필연적으로 등장했는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즉 그에게서는 자본제 생산양식과 대의제 원리와의 필연적 관계가 분석되는 것이 아니라,³⁶⁸⁾ 이미 제도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대의제의 정치적 매카니즘에 대해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언제 마르크스는 1844년 「유태인 문제에 대하여」에서 프랑스 혁명 이후 성립된 「인권 선언」과 「헌법」을 논의하면서, 근대 자유주의의 정치원리로서 나타난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가 근대적 정치혁명에 의해 형성된 한정된 정치원리임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³⁶⁹⁾

368) C. 피어슨(1986), 「마르크스주의와 민주주의 정치론」, 어수영譯 (서울: 학문과 사상사, 1989), pp. 38-49. 피어슨은 마르크스가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부르조아 발흥과 자본주의의 사업 구조와 너무 결부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즉 "초기에 시민적 정치적 자유의 발전을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출현과 결부시킬만한 강력한 역사적 증거가 있지만, 이것으로 대의 민주주의가 전적으로 부르조아 경제의 한 특징이라는 주장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민주주의에 관련한 마르크스 논의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간의 관계에 대한 필연성 자체를 문제삼고 있지 않다. 비록 그는 자유주의적 정치의 현실적 형태와 유형에 대해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지는 않았지만, 프랑스나 미국을 언급하는 가운데 동일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정치형태가 출현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자본주의의 일반적 정치형태라고 주장한다고 볼 수는 없다. 민주주의와 관련한 마르크스의 비판은 그것이 자본주의의 일반적 정치형태라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반적 정치형태로 정당화되고 있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어떠한 점에서 전정한 정치형태나 일반적 정치원리가 될 수 없는지를 밝히는데 있었다.

369) 민주주의를 근대적 현실에 한정된 것으로 파악하는 논자에 대해 보비오(N. Bobbio)는 민일 민주주의를 부르조아 계급의 지배로서만 파악한다면, 결과적으로 노동계급운동이 보통선거권을 위한 투쟁과 노동자 법령으로서의 복지입법을 위해 싸워 얻은 모든 성과를 자본가가 권력을 유

이러한 정치적 혁명은 법적으로 구성된 인간들에게만 적용된 부분적인 것이며.... 따라서 이를 통해 나타난 정치적 해방은 하나의 대약진이기는 하지만 일반적 해방의 최종적 형태는 아니다.(1844『유대인문제에 대하여』: MEW 1: 356)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마르크스는 1841년 신문의 논설에서 1844년에 이르는 시기의 저술 속에서 민주주의를 다른 구체적인 정치체제와는 구별되는 하나의 궁극적인 인민주권의 이념으로서 언급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역시 여러 형태의 정치체제의 본질이이며, 특수한 정체로서의 그것은 사회화된 인간의 본질인 것이다. 다른 모든 체제에 대한 민주주의의 관계는 여러 종류(Art)에 대한 유類(Gattung)의 관계와 같다. 민주주의에서는 형식적 원리가 바로 실질적 원리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보편적인 것과 특수한 것의 합된 통일적인 것이다.(MEW 1: 231)

즉 이러한 논의에서 마르크스는 민주주의를 근대사회에서 분리되어 나타난 국가와 시민사회를 통합하고 나아가 인간 본질의 형식적이고 내용적인 실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⁷⁰⁾ 그리고 그는 1843년 「해겔 범철학 비판」에서도 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할 대안적 정치원리로 언급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모든 정치체제의 본질, 특수한 국가체제의 형태로 사회화된 인간이다.....근래에 프랑스인은 진정한 민주주의에서는 정치적 국가가 사라진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 실제로 정치적 국가 그 자체가 정체로서 이 이상 더 전체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정치적 국가는 소멸된 것과 같다.(MEW 1: 231-2)

지하기 위해 수행한 전술로서만 이해하게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370) 마르크스에게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개인이 더 이상 사회와 대립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상을 그의 급진적 민주주의의 사상과 동일한 연속선상에 있다고 평가하는 논자로는 아비네리(S. Avineri)와 리히트하임(G. Lichtheim), 알렌 길버트 등이 있다. 아비네리(S. Avineri)는 1843년 시점에서 마르크스가 '인간의 공산주의적 본질(das kommunistische Wesen des Menschen)'을 이야기하며 동시에 '진정한 민주제'를 논의하고 있다. 그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마르크스에게서 '민주주의'는 이후에 '공산주의'라고 명명한 것과 근본적으로 틀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S. 아비네리, 「칼 마르크스의 정치사회사상」(서울: 흥성사, 1984) pp.44-5; G. Lichtheim, *Marxism* (London, 1961); Alan Gilbert, 'Political Philosophy: Marx and radical Democracy' T. Carver(ed.), *Cambridge Companion of Marx*, (1990).

이렇게 이 시기 민주주의 개념이 한편으로 긍정적인 정치원리로서 논의되고 있는 까닭은 다음의 언급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나듯이 마르크스가 당시 독일의 현실에서 민주주의가 프로이센 군주제를 비판하고 극복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는 데에서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1842년 1월 15일자 논설인 '최근 프로이센 검열제도에 대한 견해'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인간의 자주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인민 스스로 대표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민주주의적 개조가 요청된다.(C.W. Vol.1.:11)

여기서 나타나듯, 그는 1842년부터 1843년까지의 저술, 1844년 「해겔 범철학 비판」 서설, 까지의 논의에서는, 민주주의가 프로이센 입헌 군주체에 대항하는 정치원리로서 그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이때 그에게서 '민주주의'의 내용은 '인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과 '인민 스스로 대표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정치원리'라고 논의되고 있다. 그러므로 그가 1842-3년 사이에 민주주의를 다른 정치체제와는 구분되는 보편적 정치원리로 언급하거나 혹은 긍정적인 정치원리로 논의할 때, 그 개념은 현실의 정치체제로서 민주제—정확히 말해 대의적 민주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 스스로 대표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민주주의 이념 본래의 의미로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마르크스가 이 시기에 '민주주의'라는 개념보다는 '민주주의적 변혁' 혹은 '민주주의적 개조'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이 시기에 민주주의를 아직 확고한 근대 자유주의적 정치원리로 제도화되기 이전의 보다 포괄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 을 드러내주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마르크스의 언급에서 현실적 정치체제로서 민주주의, 즉 대의적 민주주의와 구분되는 본래의 민주주의적 이념을 지칭할 때는 그것을 '진정한 민주주의'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인민의 자치질서를 의미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와 현실적인 정치체제로서 제도화된 민주주의의 자유주의적 형태로서 '민주주의'가 구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자유주의 정치원리로서 대의적 민주주의를 한정적인 것으로 비판하고 있는 데에서 도 이러한 사실은 보다 명확해진다. 즉 그는 1844년 「유대인문제에 대하여」에서 근대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다만 '정치적 영역에서의 해방'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사회생활에서의 불평등의 문제는 이미 평등한 권리로 표방한 기존의 정치적 영역으로부터는 정치적 영역과 사적 영역, 즉 국가와 시민사회간의 분열을 통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판적 인식은 이미 1843년 라인신문기사 「모젤 통신원의 번호」와 1843년

『헤겔 법철학 비판』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³⁷¹⁾

사실상 이러한 변화는 마르크스의 국가관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것은 헤겔의 국가관으로부터의 탈피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분리된 정치적 영역과 시민사회 내용이 '국가'라는 이성적 공공적 영역을 통해 통합될 수 있을 것이라는 대안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었다. 또한 그는 주의회의 정책이 삼립소유자의 편에 서 있다는 점을 현실적으로 목도하면서, 기존국가의 정책이 사적 소유자의 이해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³⁷²⁾ 이에 따라 그는 1843년 2월 12일의 「라인신문」, 논설인 「프로이센 의회 위원회에 대하여」에서는 민주주의의 한 형태로서 주 의회의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게 되었던 것이다.

주 의회는 그것이 국가의 한 조직이라는 점에 비추어, 국가에 대해 특수한 세력권을 주장하는 특권을 지니고 있는 특수이익의 사회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C.W. Vol. 1: 419)

특히 위에서 인용하였던 바와 같이 민주주의에 대해 보여졌던 혼재된 표현들은 1844년 「헤겔 법철학비판 서설」에서부터는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거기에서 현실 사회의 국복이 프롤레타리아트를 통한 '혁명'으로써만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그 이후부터는 언제나 민주주의의 한계를 비판하고 있다.³⁷³⁾

371) 물론 이 시기의 저술에서는 민주주의를 긍정적인 대안으로 보는 인식과 이를 한정적인 것으로 비판하는 인식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헤겔 법철학 비판(1843)」이나 「유대인 문제에 관하여(1844)」에서도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와의 분리 자체를 모순으로 보고 따라서 이후 통합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1843년 저술의 (MEW 1권 표기로) 247, 251과 1844년 저술의 (영어 표기로) p.42, p.44 등에서 발견된다. 또 한편 시민사회의 생활 속에서 근대사회의 모순을 찾고 있는 부분은 1843년 저술의 264에서 269까지의 부분과 1844년 저술의 pp.33-34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372) 1842년 '제6회 라인주 의의의 토론회-삼립도별법에 관한 논쟁'에서 마르크스는 라인주 의회가 빙민이 나무가지 줄을 줄을 철도라는 명목으로 일괄 처리하여 형벌을 가하는 조치를 취한 법안을 응호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국가가 사적 소유자의 편에 있다는 인식이 명확히 언급되고 있다. (C.W. Vol. 1: 226-228)

373) 이러한 관점의 전환이 어느 시기 어떠한 계기를 중심으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 상이한 해석이 존재한다. 마르크스의 국가관과 민주주의관이 헤겔의 국가관에 대한 비판과 프로이센 정부에 대한 현실적 경험을 통하여 전환되었다는 일반적 해석과 달리 투넬은 상이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투넬은 마르크스에게서 공산주의로의 전환은 그가 정치경제학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부르주아 생산양식과 자본주의에 대한 어떠한 사고를 지니기 이전에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1841-2년 사이 베르лин에서 학창시절을 보내는 동안 쓰여졌던 마르크스의 노트 가운데 하나에 관심을 보이는 데, 그 하나는 국가(Republic)의 기초와 기

이렇게 볼 때 1844년 후반 이후 마르크스에게서 민주주의는 본래 그것의 의미인 '인민의 차지'라는 원리의 측면에서 보면 정치원리 그 자체와 동일시되지 않고, 그것의 제도화된 구체적 정치원리로서 자유주의의 대의제적 민주주의 정치원리를 문제삼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환은 특히 1844년 「프러시아 왕과 사회개혁」에 관한 비판적 주석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여하한 가치있는 민주주의 개념도 정치적 국가를 넘어서서 사회적 혁명을 이루어 야 한다."³⁷⁴⁾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본질은 사회생활 그 자체에 있다.(MEW 1: 282)"

이러한 언급에서 드러나듯, 마르크스는 국가의 정책이나 민주주의의 현실적 정치형태인 대의제적 민주주의의 정치원리를 통해서는 결코 사회적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파악하고 민주주의 문제를 사회적 혁명의 방식 속에서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제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⁷⁵⁾

한편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1848혁명 이후에 나타나는 마르크스의 논의는, 민주주의의 궁극적 해결은 사회적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을 견지하는 한에서 대의제 민주주의 정치원리를 당면한 계급 계 관계에 따라 선택해야하는 전술적 문제로서도 나타나고

타 신학적 테마들을 다루는 스피노자의 *Tractatus Theologico-Politicus*에 관한 막스의 노트이다. 투넬은 스피노자의 주요 주장이 막스로 하여금 독일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시작하도록 자극했다고 한다. 또 이를 통해 마르크스는 민주주의 자체에 존재하는 개념을 보다 확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투넬이 또 다른 하나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동일한 노트에서 발견되는 프랑스, 영국과 미국의 혁명적 역사를 연구이다. 그에 따르면 Kreuznach 시기에 막스의 노트에는 토크빌보다 좀더 급진적이고, 그의 「미국의 민주주의」보다 2년 먼저 출판된 헤일턴(Thomas Hamilton)의 *Men and Manners in America* (1833년에 출판되었고 1834년에 독일어로 번역되었다)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를 통해 마르크스는 민주주의의 불가피한 결과는 공산주의라는 확신으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한다. M. Rubel, "Notes on Marx's Conception of Democracy", *New Politics*, Vol. 2, 1962.

374) K. Marx, 'The King of Prussia and Social Reform', (edt.) Robert Tucker, *The Marx-Engels Reader* (N.Y.: W.W. Norton & Company, 1978), p.132.

375)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마르크스의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근거로 하여 투넬(M. Rubel)은 마르크스에게서 민주주의 개념의 연속성보다는 그 변화와 단절성을 강조하여 논의하는데 대해, 물론 그러한 논의는 변화되고 있지만, 중요한 점은 마르크스가 민주주의의 윤리에 대한 수용을 통하여 공산주의를 수용했다는 점에서 초기 개념과 정치적 태도를 결코 부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넬은 마르크스에게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인간의 진정한 자유라는 윤리적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상이한 것은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다. M. Rubel, (1962).

있다.³⁷⁶⁾ 대체로 이 시기의 언급을 근거로 하여 마르크스의 민주주의관을 그 내부에서 대립된 것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마르크스의 전체 논의의 맥락을 고려해본다면 이 시기의 민주주의 논의가 갖는 의미 또한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비판이라는 맥락 속에서 벗어난다고 보기是很 어렵며, 오히려 당시 혁명과 반혁명의 정세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는 프랑스에서 6월봉기 이후 공포된 신 헌법이 오히려 루이 나폴레옹으로 하여금 10월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 있다.

신 헌법은 프롤레타리아, 농민, 뿐만 아니라 계급의 사회적 노예 상태를 영속화하면서도 이들 계급이 보통선거를 통하여 정치권력을 소유하게 만든다. 이 헌법은 또한 부르조아에 대해서는 이들의 구 사회적 권력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회적 권리에 대한 정치적 보증을 철회한다. 신 헌법은 부르조아지의 정치적 지배를 민주주의적인 여전히 하에서 수행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매 순간마다 적대계급이 승리하는데 도움을 주고 부르조아 사회의 기초 그 자체를 위태롭게 만든다. 그러나 그것은 부르조아로 하여금 사회적 복고로부터 정치적 복고에로 복귀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한이며, 프롤레타리아로 하여금 그들이 정치적 해방에서 사회적인 해방으로 나아가지 말 것을 요구하는 한에서이다.(1850년 「프랑스에서 계급투쟁」; MEW 7: 71)

즉 이러한 언급에서 볼 때, 보통선거로 표방되는 민주주의 정치원리는 부르조아 계급의 정치적 지배를 보증해주는 동시에 그 사회적 기초 자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이중적 역할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민주주의의 이중적 역할은 사회변혁의 내용이 정치적 해방에서 사회적 해방으로 나아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 뿐인 한정적인 것으로 명확히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그는 보통선거가 그것을 통해 사회적인 해방을 달성할 수는 없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한에서, 그것의 확장을 위한 투쟁은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세력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고려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마르크스가 보통선거와 대의제 민주주의를 한정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가 민주주의적 방식을 강조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인용되고 있는 1848년 「공산당 선언」에서도 이 것이 다만 '혁명의 첫 단계'로 지적하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³⁷⁷⁾

376) 마르크스에 의하면 1848년 혁명의 의미는 부르조아 계급이 구시대 봉건제사회로부터 사회적 관계 뿐만 아니라 정치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고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이때부터 근대사회的政治질서 재편을 둘러싸고 구시대에 대항했던 투쟁세력인 부르조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 간의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전술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까닭은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마르크스는 현실적으로 아직 보통선거권이 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라면 참정권의 보편화를 위한 투쟁이 실제 정치세력관계를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러므로 그는 1853년에서부터 1866년까지, 자본의 황금 같은 성장의 시대이며 따라서 반동의 시대였던 그 시기에서의 당면투쟁을 사회혁명으로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기존 정치 체제 하에서의 세력확장으로 상정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역사적으로 보통선거권이 제도적으로 인정된 것은 1921년이었다는 점에서 나타나듯이, 19세기에 있어서 보통선거권의 확대는 그것이 직접적으로 노동자계급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급진적인 운동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은 현실에서 보통선거권의 확대를 위한 투쟁은 노동자계급에게 정치적 세력을 확장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더욱 중요하게는 이러한 헌법 정의 정치운동과정을 통해 노동자계급의 조직을 확보하고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장으로서 평가되어졌던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마르크스는 국민 현장 운동(The Chartist)과 10시간 법안(Ten Hours Bill), 아동 근로개혁법(inaugural address of the IWMA) 등의 저술을 통해서 입법투쟁을 벌였으며³⁷⁸⁾, 영국에 있어서 보통선거는 그 불가피한 귀결로써...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우위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논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록 1848년 혁명을 전후한 시기에 마르크스는 기존 국가권력에 대한 정치적 투쟁이나 입법투쟁을 통한 정치세력화를 긍정적으로 강조하여 논의하고 있지만, 이러한 태도는 그가 이 시기에도 독일의 노동자 당을 이끌며 독일의 노동운동을 독일 정부와의 연합 속에서 조직화하고자 했던 라살레(Lassalle)에 대해 근본적으로 비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볼 때 그의 중심적인 논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그가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은 '정치원리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이어야 한다(MEW 1: 324)고 지적하는 점에서,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비판이 그 정치적 역할에 따른 상이한 평가라거나 혹은 그 기능이나 특징 법률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한정된 형태로서 대의제 민주주의 정치원리 자체에 대한 것이라는 본 논문의 해석을 뒷받침 해 준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마르크스가 대의제 민주주의 정치원리 자체에 대해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에게서 지적되는 대의제 원리의 한정성을 통해 마르크스가 이해하고 있었던 본래의 '인민의 지배'로서 민주주의의 원리나 형태를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누구를 인민으로 보는가. 그리고 그러한 인민이 스스로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정치질서란 어떠한 '질서인가에 대한 논의를 간접적

377) "노동자계급 혁명의 첫단계는 프롤레타리아를 지배계급의 위치로 고양시키고 민주주의를 생취하는 것이다."(1848 「공산당선언」; MEW 4: 481).

378) 동일한 시기에 마르크스는 자본론을 쓰고 출간하였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그의 입법투쟁이 갖는 의미가 왜곡되어져서는 안된다고 판단된다.

으로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서는 마르크스가 자유주의의 대의제 민주주의 정치 원리가 어떠한 점에서 한정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마르크스는 1844년 「유태인 문제에 대하여」에서 대의제 민주주의를 근대 정치체제가 가지게 된 특징적 형태로 파악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선거에 참여하는 시민권리의 확대과정은 정치적 권리의 신장이었지만....동시에 그것은 시민의 권리를 선거참여에만 한정시키는 정치제도를 수립해 가는 과정이었다. (MEW 1: 360)

이러한 언급에서 볼 때, 근대 자유주의적 정치원리로서 형성된 대의제적 민주주의 정치의 원리적 내용은 인민의 권리들 입법부에 위임하고 따라서 입법부를 통해 인민의 권리와 이익이 대표되고 보호받게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마르크스는 이러한 정치제도의 확립이 전 시대의 신분적 불평등에 비하면 전일보한 '시민권'의 획득과정으로 나타났지만, 동시에 그것은 인간의 자유와 평등한 권리를 선거에 자유롭게 참여하는 한에서의 평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즉 자신의 권리를 위임하는 제도적 절차를 통해서만 자유롭고 동등한 권리가 되었다고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유주의적 정치원리가 대의제적 원리로 나타나게 된 것이 근대사회의 특징적 표현이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다음과 같은 이미 1843년 「헤겔 법철학 비판」에서의 논의에서 도 분명히 나타난다.

유권자들과 대표자들이 분리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시민사회와 정치사회가 분리되는 곳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 (MEW 1: 277)

즉 시민사회와 정치사회 간의 분리를 표면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가 시민사회로부터 분리된 곳에서만 제기 될 수 있는 문제이며, 그러한 분리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각 개인들 모두가 입법부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³⁷⁹⁾ 그러므로 국가와 시민사회가 분리되어 나타나는 현

379) 보비오(N. Bobbio)는 마르크스의 직접 민주주의는 그 업무의 복잡성과 비효율성 과다 등의 이유로 현실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의제 민주주의만이 현실가능한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의 마르크스의 논지에 주목한다면 대의제 민주주의는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와의 결합을 모색하고자 나온 하나의 대안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와의 분리를 '전제(토대)'로 하여 성립한 정치체제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N. Bobbo, *Which Socialism?* (Minneapolis: Minnesota Univ. Press, 1987), p. 77.

실에서는, 인간이 정치적 존재로서 확인되는 유일한 통로인 선거에의 참여를 보편화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현실적 모습이라고 한다. 즉 대의제 민주주의 정치에서 시민의 권리라는 선거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선거권으로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므로 이렇게 볼 때 마르크스는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단지 근대 사회에서 보편적 업무로 상정된 정치영역에 참여하는 것일 뿐이며 정치적 영역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님을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근대 자유주의에서 시민의 보편적 권리로 제시하고 있는 보통선거권이 인간의 보편적인 정치적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던 것이다.³⁸⁰⁾ 즉 마르크스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부르조아 정치체제라는 맥락에서 비판하고 있다 기보다는 보통선거와 대의제 정치원리 자체, 대의제적 정치 맥카니즘 자체가 본질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비판했던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표현하고 있다.

물론 수(數)적인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비록 의회적 요소의 중대가 적대적 투쟁세력들 중의 한 세력의 물리적 지적인 중대를 수반할 지라도 ... 근본적인 문제는 대의제적 원리 그 자체를 질문하는 것이다. (MEW 1: 324)

그리므로 마르크스에 있어서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해결은 의회참여의 양적 확대나 또는 위임받은 대표들이 공공이익과 복지를 위한 합리적 정책을 추구하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것으로 비판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대의제적 원리의 한계가 국가와 시민사회와의 분리, 즉 자신의 의견을 자신의 사회적 삶 속에서 표현하지 못하고 유일하게 한정된 영역 속에서만 개별적이고 분절적으로 표현하게 된다는 점에 있다는 그의 비판적 언급에서 볼 때, 그는 자신의 사적인 삶과 정치가 본원적으로 통합된 정치원리를 지향하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대의제적 정치원리를 한정된 것으로 만드는 근본적 원인이 국가와 시민사회와의 분리에서 나왔다는 그의 언급에서 볼 때, 대의제적 정치원리를 극복하는 방식은 그 원리 하에서 선거권을 수직으로 확대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를 통해 국가를 포함함으로써 시민사회와 국가의 정치적 삶을 결합하는 데에서 찾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80) 앙리 웨버(H. Weber)는 민주주의에서 취해야 할 합리적 핵심을 보통선거권이라고 하는 권리에서 찾고 있으며, 따라서 극복해야 할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 정치체제이자 보통선거권은 아니라고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보이는 보통선거권도 그 내용은 대의제 원리와 결합하여 현상할 수 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즉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에서 보통선거권은 개체적 개인에게 대표자를 위임하는 분절된 내용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현대 보통선거권의 '보통, 비밀, 일인 평등, 직접선거'라는 구체적 내용은 바로 보통선거가 가지고 있는 자유주의의 개인적 성격임을 알 수 있다. H. Weber, 'Eurocommunism, Stalinism and Democracy', *New Left Review*, No. 110, 1978, 7ff.

물론 그는 1848년 혁명이후, 현실적 계급투쟁에 대한 분석 속에서 그는 민주주의나 보통선거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 역할을 언급하고 있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르크스가 보통선거권이 가지고 있는 권리의 보편성을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권리는 필연적으로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분열을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자본제 사회에서 보통선거권은 대의제 민주주의 정치원리와 결합되어 현실에 표상되었으며, 따라서 자신의 사회적 삶과는 괴리된 개별적이고 분절적인 내용으로 나타나는 한정된 것임을 근본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는 점이다. 그렇다면 자유주의의 대의제 정치원리 자체에 대한 마르크스의 비판을 제 고찰 함으로써 그가 구상한 사회주의 정치의 구체적 원리를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정치적 권리의 위임과 그 위임된 권리의 집행을 특징으로 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가 근대사회에서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의 분리를 표현하는 것이며, 입법부를 통해 시민의 권리와 이익이 대표되고 보호받는 '대의제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특히 그의 비판적 논점은 민주주의의 자유주의적 형태에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권리로 제시한 '보통선거권'과 그 구체적 정치형태로서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에 모아져 있는데 그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 근거는 먼저 다음과 같이 논의되고 있다.

그 위임자의 의식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대표기관은 결코 대표가 아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가 알지 못하는 일에 열중하지 않는다. 주로 각자 그 주(州)의 주민의 자주적 활동을 표현해야 하는 국가기능이 자주적 활동은커녕 해당 국민의 형식적인 형태 즉 수동적인 관습조차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어이없는 모순이다. 나의 자주적 활동이 나에게 의식되지 않고 타인의 행위일수 밖에 없다는 것은 어이없는 모순이다. (1844년 5월 5일 「제 6회 라인 주 의회의 議事-출판의 자유와 주의회 의사록의 출판에 관한 논제」 C. W. Vol. I: 149)

이러한 언급에서 지적되듯이 마르크스가 대의제적 정치원리에 대해 행한 근본적인 비판 점은 첫 번째로, 마르크스는 인간의 권리가 누구에게도 양도되거나 대표될 수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비판을 하었던 근거는 마르크스 자신이 '자신의 의식과 행동에 대한 인간의 판단과 실천은 분리될 수 없으며 양도될 수 없다'고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의 권리표현으로서 보통선거권은 인간이 자신의 권리를 위임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행동과 의식을 정치적 영역에서 소외시킬 뿐이라고 비판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마르크스는 인간의 권리나 이익에 대한 올바른 판단은 스스로 권리나 이익을 판단하고 실행해 봄으로써 그 시행착오를 통해 비로소 교육되어지고 판단되어 진다고 파악하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1843년 「헤겔 법철학 비판」에서 입법권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언급

은 대의제적 원리에 대한 마르크스의 또 하나의 근본적 비판점을 나타내준다.

시민사회의 내용은 개별적 대의원들로서 행해진다.... 이로 말미암아 시민사회는 개개인으로 원자적으로 해체되고, 그리고 단지 개별적이고 일시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만 순식간에 지체 없이 집합하는 것이다.(MEW 1: 317)

인민이 개개인으로서 입법권의 성원이 되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 입법적 활동이 사회적 활동으로 고활되지 않고... 단지 추상적 개개인의 연합으로서 사회단체의 형성물에 불과한 것이므로... 선거(입법권의) 참여를 통해서는 시민사회의 모순이 결코 정치적 국가에 반영될 수 없다(MEW 1: 324)

즉 두 번째의 비판점은 개인의 권리나 이익에 대한 내용이 개별적 내용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이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분절된 권리로 나타나는 제도로는 그 진정한 내용이 대표되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의제적 정치원리 속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이익이 원자적으로만 대의 됨으로써, 그들 권리와 이익의 사회적 내용이 정치적 대표자에 의해 대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대의제 정치에서는 개인의 권리나 이익의 사회적 내용이 그 내용으로서 대표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권리나 이익의 내용을 대표해 주리라고 예상하는 타 인격을 선출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선출된 대표자의 현존 그 자체와 대표자의 행위 그 자체에서 밖에 자신의 대표로서의 요소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표자는 그가 대표한 것에 의해서 대표자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행동에 의해서 대표자인 것이다.(MEW 1: 317)

그러므로 마르크스는 권리를 위임받은 대표자는 한편으로 그가 현실적으로 시민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점과 다른 한편 그가 자신의 현존재를 벗어나 공동이익을 대표해야 한다는 점을 동시에 가지게 되는 모순이 생긴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때 현실적으로 대표자가 행위하게 되는 점은 그가 대표하는 공동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현실적 존재로서 가지고 있는 사적인 내용일 수밖에 없다(MEW 1: 329)고 비판하였다 것이다.

대의제적 정치원리 자체에 대한 그의 세 번째 비판점은 보통선거가 인민의 권리를 대표하는 유일한 절차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선출에 의해 위임된 대표성이 실제로 인민의 권리를 대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평가될 수 없다는 점으로 자적되고 있다.(MEW 1: 326) 즉 그는 위임된 권리가 실제로 대표되고 있는가를 내용적으로 물을 수 없으며, 또한

그 내용이 물어졌을지라도 실질적으로 대표하지 못한 대표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대의제적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비판은 그것이 가진 원리 자체의 한정성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비판의 초점은 인간 자신의 의식과 삶이 정치적 행위와 분리되어 있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는 인간의 의식과 자신의 정치적 행위가 본원적으로 합일되는 정치질서를 지향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판은 대의제적 정치원리 하에서는 인민의 의사가 다만 원자적이고 분절적으로 대의되기 때문에 자신의 사회적 삶의 이해관계가 전정으로 대의될 수 없다는 점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마르크스에게서 대의제적 정치원리를 극복한 정치의 원리의 상은 인민의 삶이 사회적인 한 사회적인 방식으로 표현되고 사회적으로 집행되는 것임을 추론해볼 수 있으며. 또한 그 의견의 표현과 집행의 주체는 개별적 개인이 아니라는 점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마르크스는 대의제 민주주의 정치원리를 비판하는 가운데, '인민 스스로 행동하고 대표하는 자치질서' 381)를 대안적 정치질서로 제시하고 있다. 그는 '공공이익을 판단하고 추구하며 그럼으로써 민인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철대체는 없다(1843년 2월 '최근 프로이센 검열제도에 대한 견해'; C.W. Vol. 1: 109-30)'고 본다.

따라서 그에게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극복 방안은 각 개인들의 이익과 사회적 내용이 반영될 수 없는 국가나 대의제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실제의 사회적 불평등과 모순을 담지하고 있는 실제적 인간에 의한 사회혁명으로 상정되었던 것이다.

보편적 평등은 국가에 의해서 수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인간이 스스로 보편계급화 되어야 한다. (1844 「유태인 문제에 대하여」 (MEW 1: 370)

노동계급이 혁명중이나 그 후에 국가권력을 단순히 장악하는 것만으로는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이용할 수 없다. 노동계급 노예화의 정치적 도구가 그들의 해방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될 수 없다. 국가를 폐기하고 정치적 종식의 도래를 위한 투쟁은 따라서 사회에 의한 국가의 재 출수를 위한 투쟁이다. 382)

이러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그는 1871년 이후 시기에는 민주주의를 통해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파악하는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자들과 부르조아적

381) Karl Marx(1976), C.W., Vol. I, p. 178-81. 1844년 5월 5일. 「제 6회 라인 주 의회의 토론회 출판의 자유와 주의회 의사록의 출판에 관한 논쟁」.

382) K. 마르크스, 1871, 「프랑스 내전에 관한 연설」, 『프랑스 혁명사 3부작』 (소나무, 1987), p. 314.

사회주의자를 모두를 비판하고 있다. 즉 부르조아적 사회주의자들의 제 정체들은 '자본과 임노동간의 적대적 관계에는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한에서(1848년 「공산당선언」; 79)' 한정된 기역이며, '자본주의적 생산기반 하에서의 분배의 문제만을 고려하고 있다 (1875년 「고타 강령비판」; 174)'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므로 마르크스는 자본제사회의 극복이 혁명적 동력이 없이 민주적 요소들의 단선적인 확대만으로는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는 한편으로 정치적 제도나 민주주의적 방식에 의해서가 아닌 사회혁명을 제안하는 것과는 달리,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계급이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부르조아적 제도를 포함한 부르조아 국가를 타도하고 새로운 권리기구를 갖춘 자신의 고유한 국가를 수립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과리 꼬문의 경험을 통해 노동자계급이 어떠한 정치적 지배 질서를 형성해야 하는지를 논의하였던 것이다. 383) 즉 과리 꼬문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마르크스가 제시한 프롤레타리아 정치의 본질적 성격은 노동자계급에게 절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정치조직이 필요하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게서 새로운 국가의 형성은 한편 새로운 방식의 민주주의 공화국의 건설을 바탕으로 해야한다고 논의되고 있는데, 그것은 기존 국가를 파괴하는 것, 특히 '상비군과 경찰에 집중되어 있는 낡은 지배의 물질적 힘의 도구를 폐기'함으로써만이 가능한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권력은 '모든 계급의 지향과 계급 없는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로 표현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 사이에는 전자로부터 후자로의 혁명적인 전환의 시기가 놓여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과도기에 대응하는 정치적 과도기에 국가는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독재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일 수 없다. (1875 「고타강령비판」; MEW 19: 28)

이와 같은 그의 언급은 앞서 검토하였듯이 그가 자유주의의 대의제적 원리를 비판하는 가운데 제시되었던 '시민사회를 통한 국가의 포섭'이나 '실제적 인간의 보편계급화', 즉 '사회 혁명'을 통해 사회의 변화이라는 애초의 대안과는 상이한 것으로서, 이러한 언급은 그의 정

383) "꼬문은 본질적으로 노동자계급의 정부이며 사적건유계급에 대항한 생산계급의 투쟁의 산물이다. 그것은 결국 어떤것이 노동자의 경제적 해방을 성취시킬 것인가라는 조건을 완비하고 있는 최종적으로 발전한 정치적 조직이다. (1871 「프랑스 내전에 관한 연설」; 314, 321)" 또한 꼬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있다. "즉 그것은... 시민에게 책임을 지며... 즉시 소환 가능한 시의원들로 구성되었다. 그 성원들의 다수는 당연히 노동자들이었다... 꼬문은 의회기구가 아니라 활동하는 행정부인 동시에 입법부였던 것이다... 경찰은 중앙정부의 하수인으로 계속 남았던 것이 아니라 즉각... 소환될 수 있는 집행인으로 바뀌었다." (317-8)

치관을 새로운 국가권력에 의한 시민사회의 포섭으로 해석하는 논의의 근거가 되어왔다. 특히 그는 1848년 혁명 이후의 저술에서 정치권력을 강약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언급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의제적 민주주의의 단선적 확대로는 사회의 근본적인 변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근본적인 사회혁명을 이루어야 한다는 마르크스의 논지 속에서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정치권력의 장악이라는 그의 주장이 일관성이 있는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먼저 그가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논의의 맥락을 살펴보자 한다.

마르크스는 1850년에 집필한 「프랑스에서의 계급투쟁」에서 처음으로 '프롤레타리아 계급 독재(MEW7:89-90)'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본래 라틴어 'dictatura'에서 유래한 '독재'의 개념은 당시 로마 공화정 시기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선정된 소수에게 한시적이 고 예의적으로 비상권력을 부여한데서 기원한다.³⁸⁴⁾ 그러므로 이러한 본래적 의미를 통해 보았을 때 마르크스가 '독재'라는 용어를 사용한데는 그것이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권리의 형태라기보다는 한시적이고 예외적인 권리의 형태를 뜻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³⁸⁵⁾ 또한 이러한 언급과 관련하여 마르크스의 전기작가인 프란츠 메링(F. Mehring)에 따르면, 이 시기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자 연맹의 분열을 막기 위해 불랑카 파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었 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정황기문대에서 이루어진 연설의 논의를 일반적인 마 르크스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³⁸⁶⁾ 그러므로 이러한 정황 증거는 프 롬레타리아 계급독재라는 정치적 형태가 마르크스에게서 자유주의적 정치를 극복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치의 모습은 아니었음을 추측하게 해주는 일정한 근거가 된다.

또한 이후 그가 자유주의적 정치를 극복한 정치의 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산주의 사회나 '자유로운 생산자 연합' 등의 정치질서나 권력형태에 관련해서는 어떠한 권리이라는 표

384) '독재(dictatorship)'와 관련한 라틴어 어원적 기원과 유래에 관해서는 Bertram D. Wolfe, *Marxism: One Hundred Years in the Life of a Doctrine*, (New York : 1967) 참조.

385) 반면 보비오(N. Bobbio)는 마르크스에게서 독재란 본래 로마적 의미에서의 일시적이고 한정 적인 예외적인 권리의 형태가 아니라, 그 계급의 해개모니, 그 계급의 지배를 의미하는 항상적 인 독재를 의미한다고 논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독재가 몽테스키외가 해석한 바와 같이 정치권력을 의미한다고 논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비오는 「민주주의와 독재」(전체(despotism)와 동일한 의미인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N. 보비오, 「민주주의와 독재」(서울: 인간사랑, 1993), Chap. 7 참조. "마르크스는 독재든지 전제정치든지간에 이 개념이 특 수한 통치방식을 가리키는 기술적인 의미가 아니라, 단지 어느 계급이 여타의 계급에 대해서 행사를 가리키는 기술적인 의미가 아니라, 단지 어느 계급이 여타의 계급에 대해서 행사를 가리키는 '지배'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보비오가 보기에 마르크스주의에서 독재란 그것이 부르조아 독재이건 프롤레타리아 독재이건 일의 절대적이고 베타적인 사용을 정당화한다는 점에 서 동일한 전제적 본성을 갖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권리의 절대적 사용에 대해 명백히 반대했다는 것은 본 논문의 이후의 검토에서 설명될 것이다.

386) Franz Mehring, *Karl Marx* (London, 1936), pp.202-4.

현을 사용하지 않고 일정한 질서, 차지, 연대, 연합체, 공동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의한 독재라는 권리의 형태는 통제할 대상으로서 부르조아 계급의 권리가 여전히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시기에 예외적이고 한정적으로 나타나는 정치적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³⁸⁷⁾

더욱이 그는 객관적 규범을 제시하지 못하는 법적 질서를 정당한 정치와 구분되는 '폭력'으로 규정하고 비판하고 있다. 그는 1842년의 논설인 「최근의 프로이센 검열훈령에 대한 소견」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객관적인 규범을 제시하지 못하는 편향적인 법은 폭력의 법이다. 그러한 법은 로베스피에르 치하에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로마황제 하에 국가의 타락에 의해 서 구상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행위를 규제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행위자의 심적 상태를 규제하려는 법률은 법의 부재를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MEW 1: 14)

즉 이러한 구절에서 분명히 나타나듯이 마르크스가 객관적인 규범이 없는 절대적이고 통제적인 권리의 사용에 대해 명백히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자신의 정치관 속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 개념을 예외적이고 한정적인 의미로서만 사용하고 있다는 본 논문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또 다른 근거가 된다. 그는 1844년 「유대인문제에 관하여」와 1845년 「신성가족」에서 프랑스 혁명을 통해 탄생한 공포정치, 즉 정치국가를 통한 정치혁명의 한계에 대해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화실히 이러한 정치적 국가가 시민사회 안에서 격렬하게 탄생되는 시기와, 인간이 정치적 해방을 통해 스스로를 해방시키려고 투쟁하는 시기에는 국가는 '종교를 폐기 및 파괴' 시킬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해야 한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시유재산을 폐기할 때처럼 최대한도액을 정하거나 강제몰수 또는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해야한다. 국가가 스스로를 가장 잘 인식할 수 있을 때, 정치생활은 자신의 전

387) 많은 논자들은 마르크스가 우선적인 정치권력 장악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예를 1850년 3월에 공산주의자 연맹의 중앙위원회에서 행한 다음과 같은 마르크스의 연설을 그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구절속에서도 마르크스가 중시하고 있는 것은 국가권력을 장악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사회적 혁명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민주적인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사회적 혁명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껏해야 위의 요구사항이 관철됨과 동시에 혁명을 끊임없이 부르조아가 가능한 한 떨리. 그리고 기껏해야 위의 요구사항이 관철됨과 동시에 혁명을 종결하려 하겠지만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목적은 다음의 사항이 충족될 때까지 혁명을 영구화 하는 것이다. 즉 모든 소유계급이 지배자의 위치에서 추방되고, 프롤레타리아가 국가권력을 장악하여 프롤레타리아 연합세력이 한 국가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주도적인 국가들에서도 충분히 형상되어 이를 국가의 프롤레타리아들간의 경쟁이 종식되고 죄어도 결정적인 생산력이 프롤레타리아의 수중에 집중될 때까지 혁명은 계속되어야 한다."

제조건인 시민사회 및 그 요소를 질식시키고자 하며 인간의 순수하고 조화로운 유적 생활로서 군림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은 정치생활 자체의 존재조건과 강하게 충돌함으로써, 그리하여 항구적인 혁명을 선언함으로써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 드라마는 필연적으로 종교 및 사유재산 그리고 시민사회와 모든 요소를 복구시키는 것으로 종식된다. 그것은 마치 전쟁이 평화조약의 체결로 종결되는 것과 같다. (1844년 「유대인문제에 대하여」: *MEW* 1: 357)

공포정치는 고대형태의 정치생활에 시민사회를 화생의 제물로 바치고자 했다. (1845 「신성가족」: *MEW* 2: 129)

그러므로 마르크스를 자코뱅 민주주의자로 보는 견해는 그가 프랑스 혁명에서 보여진 공포정치의 본질적 한계를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 잘못된 평가라고 생각된다.³⁸⁸⁾ 그는 이후에도 줄곧 인간의 사회적 관계자체의 변화 속에서 형성되지 않은 채 정치권력의 장악이나 변화만으로는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이룰 수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마르크스는 1847년 11월 11일자 부뤼셀 신문 논설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운동' 속에서 부르조아 생산양식을 폐기시켜 그 결과 부르조아의 정치적 지배를 확실히 없앨 수 있는 일정한 물질적 조건이 창출되지 않은 채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조아 지배를 봉파시킨다면 그 승리는 다만 일시적인 것일 뿐이며 그 결과는 부르조아에 봉사하는 계기가 되고 말 것이다. (*MEW* 15: 338-9)

또한 그는 1848 「공산당선언」에서도 바비프에게서 제안된 정치적 수단에 의한 음모적 변혁의 형태를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봉건사회가 봉괴되던 세계적인 흥분의 시대에 그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시키려는 프롤레타리아 최초의 시도는 필연적으로 실패했다. 그 이유는 당시의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아직 발전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또한 임박한 부르조아 시대에 대해서만 형성될 수 있는 조건, 즉 그 자신의 해방을 위한 경제적 조건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최초의 운동에 수반된 혁명적 문헌들은 당연히 반동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보편적 금욕주의와 사회의 평준화를 가장 조아한 형태로 교화시켰다. (1848 「공산당 선언」: *MEW* 4: 489)

388) Alan Gilbert, 'Political Philosophy: Marx and radical Democracy', *Cambridge Companion of Marx*, T. Carver(ed.), (Cambridge Univ. Press, 1990).

이러한 논지는 그가 「프랑스에서의 계급투쟁」에서 1848년의 6월 폭동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데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실패를 통해 글복하게 된 것은 이 혁명이 아니라 혁명 이전의 전통적 관계들, 아직 날카로운 계급 적대감정에까지 도달하지 않은 사회관계의 결과들, 즉 인간, 환상, 개념, 계획들인 것이다. 2월 혁명 이전의 혁명당은 아직 그 관계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2월 혁명의 승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계속적인 실패에 의해서만 그 관계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는 것이다. (*MEW* 7: 67)

그는 혁명이후 1850년 9월 15일 런던에서 열린 공산주의자 연맹의 회의에서도 블랑기파적 정치적 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우리가 노동자들에게 '계속 인내하고 사회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또 권력장악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15년, 20년, 50년 동안 내전을 해쳐 나와야 한다'고 말하지만, 당신들은 '우리는 즉시 권력을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점이나 자는 게 낫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자들이 '인민'이라는 용어를 단순한 빙말로 사용하듯이, '프롤레타리아'라는 용어도 지금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 정열로 본다면 언젠가 권력을 장악할 것 같은 당에 속하는 것은 그러한 정열을 많이 가질 필요도 없다. 나는 지금까지 계속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일시적인 관심을 반대해 왔다. 우리는 분명히 권력을 쟁취할 수 있는 당에 우리자신을 바친다. 지금 프롤레타리아가 권력을 잡는다면 프롤레타리아적인 범률이 아닌 브파부르조아적 범률을 만들었을 것이다. 우리 당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서는 당 자체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야 한다. 루이 블랑(Louis Blanc)은 사람이 권력을 시가상조로 장악할 때 무엇을 선회할 수 있을 것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전형적인 예이다. (*MEW* 8: 599-601)

이처럼 지속적인 마르크스의 논지에서 볼 때 그가 정치권력의 장악을 우선시하는 프랑스 혁명의 자코뱅적 공포정치에서부터 바비프적 정치관, 블랑기적 판점등에 대해 반대해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마르크스가 1871년의 파리 코뮌이 공포정치를 거부한데 대해 크게 지지했던 근본적 이유는 코뮌적 형태뿐만 아니라 모든 혁명이 근본적으로 공포를 수반한 정치적 변혁이 아니라는 인식에 근거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마르크스가 사회혁명보다 정치권력의 장악이나 정치적 봉기를 근본적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자유주의적 정치형태를 극복한 그의 궁극적인 정치원리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한정적인 정치형태인 대의제 민주주의와 구분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주체를 그가 무엇으로 파악하였는지와 연관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민주주의가 인민의 지배를 의미한다

면, 과연 누가 인민인가, 즉 누가 민주주의의 정당한 주체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마르크스가 그것을 '자유로운 생산자' 혹은 '프롤레타리아트'로 논의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서 본 논문의 검토에 따르면 그에게서 '생산자'란 단지 물질적 자료를 산출하는 행위자가 아니며 하나의 일정한 사회적 가치를 산출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인간의 생산활동은 자연히 사회에 대한 저항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산출해가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렇게 보면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자유로운 생산자와 프롤레타리아란 그것의 본성이 새로운 사회의 가치를 보편적으로 산출해내는데 있다는 점에서 보거나 또한 이를 위해서는 현존 현실의 사회적 가치를 정당하지 못하다고 비판하고 저항하는데 있다는 점으로 보면 본질적으로 상이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³⁸⁹⁾ 다만 이러한 마르크스의 인식은 당시 19세기 중반의 역사적 현실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당시의 시점에서 노동자는 정치적 선거권과 시민권을 갖지 못했으며 따라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자의 상황은 보편적 저항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마르크스의 민주주의 논의는 초기와 후기로 구분되고 초기는 분권적 권력으로 후기는 집권적 권력형태로 그 차이가 지적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자유주의적 정치권력이 가지고 있는 그 통제적 성격과 지배적 성격에 대해 비판하였으며, 이를 극복한 궁극적인 정치 속에 나타나는 '지배'란 태인에 대한 강제적 통제를 그 본성으로 하는 자유주의적 정치권력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자연스런 서로간의 교류'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 민주주의에서의 지배와 프롤레타리아의 지배를 실질적인 권력의 형태와 기능에 의해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그에게서 민주주의는 분권적 권력모델과 집권적 권력모델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인민의 지배라는 관점에서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검토가 정당하다면, 애초에 마르크스에게서 자유주의적 정치의 대안으로 제시된 '생산자 연대'나 혹은 '인간의 의식과 정치적 행위가 본원적으로 통일된 자치질서'의 정치상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대안과 서로 대립하는 관점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마르크스에게서 새로운 정치의 상은 인민의 자치, 자유로운 생산자 연대, 공동체적 질서로 제시되며 따라서 그에게서 진정한 민주주의의 주체는 '자유로운 생산자'이며 이들

389) 이렇게 마르크스의 정치관을 일관된 연속선 상에서 파악하는 견해로는 맥렐런(D. McLellan), 드레이퍼(H. Draper), 콜레티(L. Colletti) 등이 있다. 맥렐런은 마르크스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단지 파도기적 방법으로만 보았다고 보고, 따라서 그가 분권화된 정치체제라는 의미에서 초기와 후기 민주주의관의 상관성을 주장한다. D. McLellan, 「칼 마르크스의 사상」, 신오현譯, (서울: 민음사, 1982) p.315; 또한 드레이퍼는 "마르크스에게서 초기의 민주주의관은... 이후에도 품평의 의미에서 전지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H. Draper, *Karl Marx's Theory of Revolution*, Vol.2 (N.Y: Monthly Review Press, 1977), p.59.

의 비판적 활동과 연대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비록 마르크스는 새로운 정치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체계화하거나 명시적으로 개념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서 검토하였던 바와 같이 자유주의의 대의제적 민주주의의 정치원리에 대한 그의 비판점으로부터 그것을 추론해본다면, 인간의 의식과 자신의 정치적 행위가 합일되는 정치질서를 지향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마르크스가 개별적이고 원자적인 선거에 의해서는 사회의 사회적 내용이 대의될 수 없다고 비판하였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대의제 원리 자체를 비판했다면, 새로운 정치의 원리는 인민의 의사가 사회적으로 대변되고 사회적으로 실행되는 질서를 뜻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마르크스는 광포로 장악한 정치권력이나 정치혁명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며, 근본적으로 새로운 정치질서의 형성은 사회혁명의 원리 속에서만 성립 가능하다고 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는 계약론적 자유주의의 정치에 내포된 도구적 성격을 비판하는 가운데, 그리고 민주주의의 자유주의적 형태에 대한 한정성을 비판하는 가운데 그 사회의 진정한 합의와 정당성을 그러한 한정된 현존 정치질서에 대한 근본적 비판으로 찾아갔던 것이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에게 정당한 정치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혁명의 문제로 나아간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마르크스가 새로운 정치질서의 형성을 위해 근본적인 것이라고 여겼던 사회혁명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음에서는 마르크스에게서 정치혁명과 구분되는 사회혁명의 근본적 의미를 살펴보되, 특히 사회혁명과 그 주체의 정당한 근거를 어떠한 기준에서 찾고있는지에 주목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결과 과연 마르크스에게 제시되는 사회혁명의 정당한 근거가 그의 정당한 정치이념의 상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자유주의 정치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

- 새로운 '정치'의 정당성 근거와 그 정당한 주체의 문제

앞서 살펴보았듯이 마르크스는 정치가 인간과 배타적인 인위적 가공물도 아니며 따라서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단이나 이를 위해 인간을 통제하는 지배권력도 아니라고 비판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에게서 정치란 인간의 자연스런 삶과 인간과 인간간의 관계가 그 자체로 정치적 질서로서 형성되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인간의 의식과 정치적 행위의 본원적 합일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그에게서 정치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질서일 뿐 아니라 도덕적인 하나님의 정당한 질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에게서 정당한 정치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 정치질서가 자연스럽고 도덕적이라 는 판단은 어떠한 기준에서 찾아질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서는 그가 제안하고 있는 새로

운 정치와 그 주체의 정당성 근거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에게서 나타나는 사회혁명의 정당성 근거와 그 주체로서 프롤레타리아의 정당성 근거와 관련하여, 그 보편성의 기준이 역사적으로 상대적인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객관적이고 혹은 보편적 기준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상이한 견해가 주장되어 왔다. 우드(A. Wood)는 마르크스가 그의 사회혁명과 관련한 윤리적 판단이 해당 사회의 의식구조 안에서만 내려질 수 있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윤리적 상대주의자 혹은 환원주의자라고 평가하고 있다.³⁹⁰⁾ 반면 엘런 길버트(A. Gilbert)는 마르크스의 윤리론에 일정한 객관적 기준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논지 속에서 마르크스의 윤리론은 '윤리적 실재론'이라고 명명하고 있다.³⁹¹⁾ 그에 따르면, 마르크스가 윤리적 실재론자인 근거는 그가 협동과 자유에 대한 인간 잠재력을 통해 도덕성의 진보와 도덕적 판단이 갖는 객관성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찾았다고 있다.³⁹²⁾

마르크스에 대한 아렌트와 하버마스의 비판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서론에서 설명하였듯이 아렌트는 마르크스가 역사의 도덕적 판단을 객관적 필연성 속에서 찾음으로써 결국 전리의 독재가 되고 전체주의로 귀결되고 말았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적 논의에 근거하여 그녀는 '실천action'의 조건을 '다원성plurality'의 실현³⁹³⁾으로 제시하고 따라서 공공적인 것의 근거를 다양한 인간들의 참여와 자유에서 찾고 있다. 또한 하버마스도 마르크스의 역사관은 하나님의 객관적 필연성에 의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었다. 이러한 비판에 근거하여 하버마스는 역사에서 규범성은 오직 인간의 실천에 의해서만 획득되고 구제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이를 '상호토론론'에 의한 합의'에서 찾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역사의 전리는 하나님의 '행위에 의한 전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서처럼 각자의 상이한 견해와 행위를 공공적이고 정당하다는 비의

390) Allen W. Wood, 'The Marxian Critique of Justice',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1, 1971, 241-82.

391) Alan Gilbert, 'Historical Theory and the Structure of Moral Argument in Marx', *Political Theory*, Vol. 9, 1981, pp. 173-4, 205; Alan Gilbert, (1990).

392) 엘런 길버트(A. Gilbert)는 이러한 점에서 마르크스의 사상에 일관된 윤리이론이 존재하며 나아가 그러한 마르크스의 윤리관은 아리스토텐레스의 행복론과 윤리관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마르크스는 아리스토텐레스와 행복이 인간의 내적 활동속에 있다 는 행복관(eudaimonia)과 정치관에 있어서 동일한 관점은 공유하고 있다. Alan Gilbert, '마르크스의 윤리적 실재론', 「마르크스 이후」(1983) 페렌스 출판사, 저인스 파워음(신서원, 1990).

393) H. Arendt (1958), pp. 175-6. 아렌트에 따르면, '노동(labor)'이 반복적인 작업을 특성으로 하는 것으로 그 속에서 인간은 상호대체될 수 있으며 인간의 다원성이 별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반면, '실천action'과 '발언speech'은 이제까지 존재했던 그리고 앞으로 존재할 어떤 누구와도 같이 않은 그 만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는 인간의 다원성plurality를 전제로 하는 것 이다. 그녀는 이러한 다원성을 전제로서만이 상호간의 발언과 이를 통한 공적 영역의 실천적 회복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준으로 삼는다면, 합의된 것은 모두 진리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³⁹⁴⁾ 즉 서로간의 합의의 내용이 다를 때 진실된 합의와 거짓된 합의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실제로 이들의 논의 내에서는 또 다른 합의를 통해서 밖에는 찾아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마르크스에 대한 이들의 비판과 같이 어떠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순간 그것은 인간의 자유와 다원성을 억압하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하버마스가 상호토론을 통한 합의라는 공론장을 공공적이고 정당한 정치질서의 근거로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공공성의 기준이 두 사람이 서로 소통하였다는 점 자체에서 찾아지는지 아니며, 그려한 소통이 하나의 합의를 이룰 때 찾아지는지 혹은 이루어진 합의의 정당성에서 찾아지는지 분명치 않다. 하버마스는 자신이 제시한 상호주관성(Intersubjektibilität)개념 만을 통해서는 사회비판의 보편적 준거를 마련할 수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후의 논의에서 이상적 소통상황을 전제하고 있다.³⁹⁵⁾ 즉 그는 '상호주관성'이라는 우연적인 역사철학적 가정에서 불변적 규칙체계로서의 언어적 구조인 '보편화용론(Universalpragmatik)'을 주장하는 데로 그의 논의를 전환하였던 것이다.³⁹⁶⁾ 그러나 과연 발화행위(Sprechakt)를

394) 한 사회에서 비판적 이해의 가능성과 그 기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인간의 독자적 이해의 가능성이라는 문제는 가다마(Hans-Georg Gadamer)에게서 전통에 대한 선이해와 이해의 보편성 문제로서 제기되기도 하였다. 즉 그는 모든 인간의 의견과 사고가 전통의 맥락에서 계승되고 이해된다고 하였을 때, 우연적이고 주관적인 모든 사람의 행위로부터 그 사회의 타당한 비판의 이해된다하고 하였다.

395) 상호주관성(Intersubjektibilität)이라는 그의 논의에서 합의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하버마스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안하고 있다. 즉 하버마스에 따르면, '각각의 언어행위에는 합의라는 목표가 이미 내재한다'고 전제된다. J. 하버마스, *인식과 관심*, 1969, 163면; 또한 그는 합의의 기준, 혹은 전리의 기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력으로부터 해방된 의사소통(herrschaftsgreie Kommunikation)'을 가정하고 있다. J. Habermas, *Theorie und Praxis*, 4 Auf (Frankfurt; 1971) p. 23. 이러한 방향전환을 통해 하버마스는 역사철학을 실천적으로 하고자 하리라는 그의 애초의 의도와 반대로 오히려 추상적이고 선형적인 언어적 구조, 혹은 인간학적 구조를 전제하여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396) 하버마스의 이러한 방향전환에 대해 R. 아이겔파시는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하버마스는 언어의 구조속에서 궁극적이며 모든 이데올로기적인 형의로부터 벗어난 사회비판의 기준을 발견한다" R. 아이겔파시, 「비판적 사회과학과 철학적 인간학」 (서광사, 1999) p. 116.

속달함으로써 '하나의 제한되지 않고 강제 없는 토의'라는 이상적 언어상황을 실제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왜냐하면 언어 자체가 이미 그 개인의 사회성과 개인인식의 표현이므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억압적인 권력구조와 체계로부터 독립적인 언어가 발화될 수 있는지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하버마스는 각 개인의 자유로운 발화행위를 강제하고 방해하는 체계적 권력으로부터 어떻게 이러한 이상적 언어상황에 이를 수 있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하나의 귀결점으로 제시될 수 있는 이상적 상황을 소통과 합의의 전제로 삼음으로써, 결국 그의 이상적 토론은 행위를 수반하지 못하게 되고 노동과 권력이라는 사회체계로부터 고립됨으로써 사회적 실천으로부터 분리되고 말았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권력의 공공성이나 정당성이 어떠한 근거에서 판단되어지는지의 문제는 마르크스에 대한 그들의 비판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마르크스에 대한 비판을 경유하여 하버마스 등이 제시하고 있는 합의의 공공적 근거에 대한 타당성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러한 기준이 없다면 존재하는 권력이 전제적 권력인지 공공권력인지에 대한 판단은 현실에 존재하는 권력에 의해서만 정당화되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에게서 절당한 정치의 준거점은 자유주의적 정치의 공공성이나 정당성에 대한 비판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제까지의 논문의 검토에서 보았듯이 마르크스는 개인과 개인, 그리고 개인과 사회와 국가간의 관계를 각각 독립적인 것으로 구분하고 그것을 배타적으로 이해하는 자유주의적 관점 속에서는 한 사회의 보편성이나 공공성은 마련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었다. 따라서 개인의 절대적 권리를 근거로 그러한 개개인의 계약을 통해서는 진정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마르크스는 상호 부정적인 자연상태로부터 사회상태로의 이행이라는 자유주의적 이론 내부에서는 그러한 사회적 계약의 필연성을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배타적인 개개인의 절대적 권리에 근거한 계약은 한 사회의 합의, 즉 일반적 이익을 마련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개인의 의사가 배타적이고 상치될 때 과연 합의된 계약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가려질 수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비판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한 사회의 합의를 추상적으로 전제하거나 혹은 개개인의 권리로 환원하는 경향을 모두 비판하는 가운데, 어떻게 인간들간의 배타적 상황을 극복하여 진정한 사회의 합의를 형성할 수 있는지를 탐구했다고 할 수 있다. 마르크스는 사회 변혁의 정당성 근거를 '프롤레타리아 계급', 혹은 '자유로운 생산자의 연대'로서 논의하고 있다. 만일 마르크스의 논의 내에서 정당한 정치의 객관적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면, 마르크스에게서 정당한 정치의 이념을 발견할 수 없다는 하버마스의 비판은 타당성을 잃게 된다. 그러나 마르크스에게서 제시된 기준이 추상적인 것이거나 독단적인 것이라면, 마르크스에게서 제시된

정당성의 근거가 객관적 필연성에 따른 추상적인 것이라는 그들의 비판은 일정한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다.

마르크스에게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역할에 대한 최초의 논의는 1844년 「해겔 법철학 비판 서설」에서 나타나며, 1848년 「공산당 선언」에서는 하나의 계급으로서 부르조아와 프롤레타리아의 존재와 역할이 보다 사회적인 의미로 명확히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하였던 바와 같이 '계급(class)' 개념과 '부르조아(bourgeoisie)' 개념은 마르크스에게서 논의되기 이전부터 이미 사용되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기조(F. Guizot)가 1828년 자신의 유럽문명사 강의에서도 부르조아 계급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는 데에서도 확인된다.³⁹⁷⁾ 즉 이러한 용례들은 19세기에 와서는 이전의 전통적인 사회의 신분과 위계를 나타내던 '위계사회'나 혹은 '신분사회'라는 개념 대신에 계급사회(society of classes)로 표기하는 것이 자유주의자나 사회주의자 모두에게서 이미 많은 부분 일반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이미 18세기부터 19세기 중반에 이르는 동안 '계급(class)' 개념이 사용되어 오면서, 처음에는 그것이 '정치적 신분'과는 달리 '상이한 경제적 기능'에 따른 구분을 지칭하였으나 점차 19세기에 와서는 '경제적' 의미만을 넘어서 하나의 사회적 역할이나 세력으로서 논의되어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마르크스에게서 이해된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사회적 의미가 무엇이었느냐는 점이다.

1844년 「해겔 법철학 비판」에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명시적으로 논의되기 이전에 마르크스는 1842년 신문 논설 시기애 이를 단지 빙민, 혹은 '빈곤한 계급Pöbel(MEW 1: 119)'으로 표현하였으며, 1843년 「해겔 법철학 비판」에서는 '재산이 없으며 노동을 해야할 절박한 필요가 있는 계급, 즉 구체적 노동을 하는 계급(MEW 1: 284)'으로 논의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르크스에게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는 용어는 1844년 「해겔 법철학 비판서설」을 통해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나타난다.³⁹⁸⁾

독일 해방의 실질적 가능성은 어디에 있는가? 근본적으로 사슬에 얹매인 한 계급의 형성 속에, 시민사회와 한 계급이지만 시민사회와 계급이 아닌 한 계급의 형성 속에, 모든 신분의 해체인 한 신분의 형성 속에, 그리고 다음과 같은 한 영역의 형성 속에 그 가능성이 있다. 즉 그 자신의 보편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보편적인 성격을 소유

397) F. Guizot, *Historical Essays And Lectures* (Stanley Mellon (ed), Chicago: Chicago Univ. Press, 1972), p.206.

398) 마르크스는 1844년 이전 시기에는 이를 다만 '빈곤한 계급', '빙민' 등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빈곤한 계급(Pöbel) 그 자신은 시민사회에 단지 거주하는 사람들일 뿐 시민이 아닌 것이다. (1842년 10월 26일 논설: MEW 1: 119)"

하고 있으며, 어떤 특별한 부당함이 아니라 부당함 그 자체가 그들에게 저질러지기 때문에 아무런 특별한 권리도 요구하니 못하는 영역.... 사회의 다른 모든 영역들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지 않고는, 그리하여 사회의 다른 모든 영역들까지도 해방시키지 않고서는 결코 해방될 수 없는 한 영역. 즉 완전한 인간의 삶이며 따라서 인간의 완전한 재회복을 통해서만 자기 자신을 획득할 수 있는 한 영역의 형성 속에 해방의 가능성은 있다. 특정 신분으로의 사회의 이러한 해체가 곧 프롤레타리아트이다. (MEW 1: 390)

여기서 언급되고 있듯이, 그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저항을 그 시대의 정당한 비판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저항이 정당한 해방일 수 있는 근거는 그들의 저항이 그 사회의 '보편적 부정'이라는 데서 찾아진다. 즉 그는 이러한 프롤레타리아트의 저항이 어떠한 특정한 내용에 대한 부정이나 국복이 아니라 인간성 자체에 대한 전면적 국복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편적이라고 파악하였으며, 그로부터 새로운 정치의 정당성 근거를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는 프롤레타리아트를 어떠한 객관적 존재로 규정하기보다는 하나의 '형성되어야 하는 존재'로서 이해하고 있다. 그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준거가 단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자라는 객관적 조건에서만 찾고 있지 않는다는 본 논문의 견해는 마르크스가『브뤼메르 18일』에서 프랑스 농민의 지위를 논하는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엿볼 수 있다.

그들 생존의 경제적 조건이.... 그들의 생활양식, 그들의 이해, 그들의 문화를 다른 계급의 그것들과 대립시키지만.... 그들 이해관계의 이같은 동일성이 그들 가운데서 어떠한 공동체, 국민적 유대, 정치적 조직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 그들은 계급을 형성치 못한다. (브뤼메르 18일 pp. 123-4)

이러한 구절에서 나타나듯이 마르크스는 변혁의 주체로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단지 '생존의 경제적 조건'이나 '물질적 이해관계의 동일성'에 따라서 형성되거나 혹은 소득의 원천이나 분업상의 기능적 위치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가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객관적으로 주어진 주체로 이해하지 않았다는 것은 마르크스가 이후 1864년 프루동주의자들의 상호주의를 보편주의에 대한 회피라고 비판하고 이를 「인터내셔널 총회」의 서문에서 표현되며, 1870년 영국 노동계급의 한계를 그들의 경험을 사회적으로 보편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하고 있다는(MEW 16: 45)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399)

399) 대중에 대한 신뢰를 갖지 않고 있는 바우어를 비판하는 데에서도 나타나듯이 마르크스는 사회주의 운동을 프롤레타리아와 분리해서 사고하려는 사회주의자들을 명백히 반대하였지만, 동시에 공산주의의 연맹의 구성원이 베타적으로 프롤레타리아에 의해서만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

그리므로 마르크스에게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하나의 계급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객관적 조건 자체가 아니라 '스스로'의 이념에 보편성이라는 형태를 부여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으로서, 그러한 계급의 보편성은 자신의 이익을 사회 전체의 공동이익과 일치시킬 때 형성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1846년『독일이데올로기』에서 표현된 다음의 논의에 이러한 그의 논지가 나타난다.

이전의 지배계급을 대신하게 될 모든 새로운 계급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상적으로 표현된 자신의 이익을 사회 전구성원의 공동이익으로 표상해야만 하는 것이다. 즉 스스로의 이념에 보편성이라는 형태를 부여해야만 하는 것이다. 혁명을 일으키는 계급은 처음부터 이러한 계급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전체의 대표자로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1846 GI: 61-2; MEW 3: 34)

따라서 그에게서 정당한 주체의 준거는 그 사회의 역사적 현실에서 보편적인 것이어야 하지만, 그것은 이미 주어진 특정한 객관적 조건이라기보다는 사회전체의 보편적 대표로 '형성'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마르크스는 이러한 보편성의 획득이 그들의 보편적인 '결사'에 의해서 그리고 기존의 사회관계를 바꾸어 나이가는 '혁명'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자기화(Aneignung)는 프롤레타리아의 특징 그 자체에 의해서 다시 보편적으로 되는 결사(Vereinigung)에 의해서, 혁명에 의해서 완성될 수 있다. 그 혁명에서 한편으로는 지금까지의 생산양식 및 교류양식, 그리고 사회구성의 권력이 전복되고, 다른 한편에서 프롤레타리아의 보편적인 특징과 자기화의 실행에 필요한 프롤레타리아의 에너르기가 발전된다. (MEW 3: 68 영문판에는 없음)

이에 따라 각 개인은 모든 자연 성장적인 예속을 벗어난 완전한 개인으로 발전하며, 노동은 자기행위로 변형된다. (MEW 3: 69)

이러한 논지는 1845년『신성가족』에서의 다음과 같은 언급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

프롤레타리아가 승리할 때 프롤레타리아는 바로 이 승리에 의해서 사회의 절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프롤레타리아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반대면을 동시에

한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루벨은 마르크스가 1850년 공산주의자 연맹에서 갈라서게 된 주원인이 그와 같은 점에서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F. Mehring, (1962); M. 루벨, 「마르크스-연대기」, 김영민譯 (서울: 아침, 1988) 참조.

초극함으로써만 참으로 승리하게 되기 때문이다. 오직 그 때에 가서야 비로소 프롤레타리아와 프롤레타리아를 규정하는 반 명제Antithesis인 자유재산이 소멸된다. (1845『신성가족』; MEW 2: 187)

그러므로 이렇게 볼 때 마르크스에게서 사회 변혁의 정당성은 프롤레타리아트의 경제적 조건이나 물질적 이해관계의 동일성 그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건에 대한 저항이 하나의 '보편적 유대'와 '결사'를 만들고 하나의 공동적인 사회관계를 새로이 '형성'해 나아가는 데서 찾아진다고 할 수 있다.⁴⁰⁰⁾

이와 관련하여 마르크스에게서 혁명 주체의 근거가 프롤레타리아의 물질적 조건 자체에 있지 않다는 해석은 이미 루카치(G. Lukacs)에 의해서 제기된 바 있었다. 루카치는 혁명 주체의 정당한 근거를 프롤레타리아트의 자기의식, 즉 계급의식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위의 검토를 통해 보았을 때 마르크스에게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존재성을 결정하는 것은 분명히 객관적 조건 자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주관적 의식이나 주체적 실천이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마르크스는 분명히 개개인의 집합적 행위가 아니라 프롤레타리아의 비판과 연대를 통해 그 시대의 보편적인 저항이 수행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가 자유주의의 계약론적 정치적 실천에 대해 비판했던 바도 개개인의 윤리적 실천의 집합으로는 한 사회의 공공성을 형성할 수 없다는데 있었다.

그러므로 실제로 마르크스가 공공적이고 정당한 권력과 타락한 권력, 즉 독재권력을 구분하는 기준을 따로 제시하고 있는 않지만, 위에서 검토한 논의를 통해 추론될 수 있는 그 기준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정당한 권력의 준거는 그것이 사회의

400) 마르크스에게서 사회극복의 정당성 근거와 그 주체의 정당성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는 진정한 인간의 사회성에 대한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에게서 누가 사회혁명의 정당한 주체인가 하는 문제는 무엇이 그 사회의 진정한 civility를 구성하며 어떠한 인간의 모습이 진정한 그 사회의 인간으로서 '시민'인가라는 질문과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본 장 1절의 검토에 의하면, 마르크스에게서 '사회'를 사회에게 하는 근본적 성격은, 그리하여 사회의 civility를 구성하는 본질적 성격은 인간의 자기의식적인 '비판활동'과 타인과의 '보편적 연대'에 있었다. 그러므로 사회혁명의 정당한 주체로서 '보편계급'의 성격은 바로 이와 같은 인간의 진정한 사회적 성격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렇게 볼 때 보편계급으로서 프롤레타리아가 수행하고 추구해야하는 중심적 활동과 중심 권리는 경제적 임금투쟁이 아니라 단결권, 결사권, 저항권을 확립하고 이에 바탕하여 생산과 소유관계의 보편적 결사를 형성하는데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람시(A. Gramsci)는 「옥중수고」에서 프롤레타리아트가 추구해야 할 권리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부르조아 계급은 개인의 자유권과 개인의 우위성을 확립함으로써 봉건 노예계로부터 자신을 구원했다. 프롤레타리아트는 개인적 권리와 개인의 우위성을 대항해서 단결권과 결단활동의 권리를 확립함으로써, 그리고 개인주도성의 조직과 자유의 조직화를 이름으로써 자신을 해방시키고자 투쟁한다." A. Gramsci, *The Prisoner's Note* (London: Lawrence and Wishart, 1971), p.186.

가장 일반적인 저항과 일반적인 목표에 일치해야 한다는 점이다. 위에서 살펴본 1846년의 논의 이외에도 그는 1844년 「해설법철학 비판 서문」에서도 이를 일반이익과의 일치에서 찾고 있다.

시민사회에 있어서 어떠한 계급도, 그 자체 속에서 또한 대중 속에서 열정의 계기 를 아기시킬 수 없다면 이러한 역할을 맡을 수 없다. 열정의 순간에는 계급은 대체로 사회와 연관되고 혼합되어 있으며, 사회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고 이 사회의 일반적 대표로서 인식되는 것이다. 계급의 목표의 이해는 전적으로 사회 자체의 이해와 목표에 일치하여야만 하며, 그럼으로써 그 계급은 사회의 심장이며 머리가 되는 것이다. 한 특정계급이 일반적 우위를 주장한다거나.....물질적인 힘을 정치권력화 시킬 수 있는 천재력을 가졌다고 주장할 수 있다거나, 그의 적에게 '지금의 나는 무이지만 앞으로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거나 하는 것은 오직 일반이익의 이름 하에 서만 가능한 것이다. (MEW 1: 388)

둘째로는, 그가 객관적 규범을 제시하지 못하는 법적 질서를 정당한 정치와 구분되는 폭력으로 규정하고 비판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 정당한 권력이란 일정한 객관적 규범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추론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마르크스는 1842년의 논설인 「최근의 프로이센 검열훈령에 대한 소견」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객관적인 규범을 제시하지 못하는 편향적인 법은 폭력의 법이다. 그러한 법은 로베스피에르 치하에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로마황제 하에 국가의 타락에 의해 서 구상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행위를 규제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행위자의 심적 상태를 규제하려는 법률은 법의 부재를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MEW 1: 14)

이상의 검토에서 보았을 때, 마르크스의 윤리관이 역사와 상황의 변화 속에서 다만 상대적일 뿐이라는 우드(Allen W. Wood) 등의 평가는 잘못된 것이며, 다른 한편 마르크스의 윤리관이 객관적 필연성이라는 추상적 기준에 강제된 것이라는 아렌트(H. Arendt)와 하버마스(J. Habermas), 벨머(Bellmer)의 평가 또한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사회의 정당한 비판과 저항의 주체로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정당성이 자신의 행위와 이익을 사회 전체의 일반적 이익으로 일치시킨 데 근거하며 그러한 결사를 통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그들의 행위와 연대에 일정한 기준과 규범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마르크스에게 사회비판의 정당성 근거는 어떠한 추상적인 필연성도 아니며, 그렇다고 인간의 주관적 실천으로 무화되어 버린 것도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그에게서 현존 사회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회혁명의 정당성 근거는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그가 새로운 정치의 정당성 근거를 무엇으로부터 찾고 있는지를 추론해보자 한다. 앞서 검토하였던 바와 같이 그는 1844년『유태인문제』에 관하여, 1845년『신성가족』에서 프랑스 혁명을 통해 탄생한 공포정치, 즉 정치국가를 통한 정치혁명의 한계에 대해 분명히 지적하였으며, 절대적이고 통제적인 권력의 사용에 대해 명백히 반대하였다. 그러므로 정치권력 장악을 통한 절대적 권리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개념은 그 객관적 규범이나 보편적 결사가 결여된 것이므로 마르크스에게서 정당한 정치로 계안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다만 예외적이고 한정적인 의미로서만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그는 한 사회의 극복과 변화의 정당성을, 정치권력 장악을 통한 '정치혁명'과는 구분되는 근본적 '사회혁명'으로 제시하고 있다. 1845년의『신성가족』에서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각자에게는 그의 존재를 생기있게 구현할 수 있는 사회적 영역이 제공되어야 한다. 만일 인간이 그의 환경에 의해서 형성된다면 그의 환경이 인간적인 것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만일 인간이 본래적으로 사회적이라면, 그는 그의 진정한 본성을 오직 사회 안에서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의 본성이 행사하는 힘은 격리된 개인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의 힘에 의해서 촉진되어야 한다. (MEW 2: 175-6)

그러므로 마르크스에게서 '혁명'의 정당성이란 또 다른 정치 권력장악을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간의 변화, 새로운 사회관계의 창출의 기초를 닦는 교육과 육성의 잠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1846년『독일이데올로기』에서 사회혁명의 역할이 인간으로 하여금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하도록 하는 하나의 교육의 과정임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동체적 의식을 대규모로 만들어내고 동시에 그러한 목적 자체를 관찰시키기 위해서는 오직 실천적 운동, 즉 혁명을 통해서만 생겨날 수 있는 전면적인 인간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자비개급은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도 전복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복을 수행하는 계급 또한 혁명 속에서만 남아빠진 오물을 치워버리고 새로운 사회의 기초를 닦을 수 있기 때문에 혁명은 필수 불가결하다. (1846 GI: MEW 3: 70)*

이 논지는 1871년 파리 코뮌을 분석한『프랑스 내전』에서도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다.

노동자계급은 국민투표를 가지고 만반의 준비가 된 유도피아를 맞으려해서는 안된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해방과 더불어 보다 나아진 생활형태를 힘들여 만들어내기 위하여 자신들의 경제적 발전에 의거하여 억누를 수 없는 기세로 현재의 사회에 대항하여 투쟁하고 있으며, 그들 노동자계급이, 환경 뿐 아니라 인간도 전체적으로 변형시켜 주는 오랜 투쟁들, 즉 일련의 전개적인 역사적 과정을 완수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이 실현해야 할 이상은 전혀 없다. 그들은 자유로이 이미 부르조아 사회의 붕괴에서 발전되어 나왔던 새로운 사회의 요소를 채울 의무만을 가질 뿐이다. (MEW 17: 343)

즉 마르크스는 물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제안하기도 하였지만 그것은 인간의 의식과 행위가 본원적으로 합일된 하나의 보편적 결사체를 정치질서로 지향하였던 그의 본래의 정치관에 비추어 볼 때, 또한 그가 절대적인 권력의 사용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본적 혁명의 정당성은 정치권력의 획득을 통한 사회구조의 재편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회적 관계를 바꾸어 나아가는 데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자유주의적 국가관에 대한 마르크스의 비판점이 국가를 하나의 인위적인 권리의 실체로서만 파악하는 데 대한 비판이었다는 점을 통해서도 이러한 논지는 확인될 수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마르크스는 1871년『프랑스 내전』초고인『Entwürfe zum Bürgerkrieg in Frankreich』에서 「파리콤문」의 의의를 '기존 국가에 대응하는 또 하나의 국가'라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자연스런 소산으로서 형성된 자유로운 지역자치적 정치질서'에서 찾고 있었던 것이다.

보통선거권은 지배계급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의회에서 인민을 거짓으로 대표하도록 3년이나 6년에 한번씩 결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적 기업가들이 자신의 회사를 위해 일할 노동자나 관리를 찾는데 개별적인 선거를 이용하듯이 인민들을 코뮌으로 조직하는데 선거를 이용해야 했다.보통선거의 장에서 위계적인 관직의 수여보다 더 코뮌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도 없다.코뮌의 존재 자체는 자연스러운 소산으로서 지역 자치적 자유를 놓는 것이지, 그 지점에서 이미 과잉되었던 국가에 대응하는 힘으로서 놓는 것이 아니다. 코뮌이 승인했던 특정한 방도들은 오직 인민에 의한 인민의 통치를 지향하는 성격을 예견케 할 뿐이다. (MEW 17: 598)

이러한 논지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유주의적 국가관에 대한 마르크스의 비판은 권력의 소재지로서 국가가 존재하는 한 그것은 진정한 보편성이 아니라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에게서 국가 혹은 권력의 정당성은 모든 권력이 자발적인 사회적 결사체들에게 주어져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그러할 때 권력은 보편적 권력⁴⁰¹⁾이 된다. 그

는 그러한 의미에서 '정치적 국가'는 지양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마르크스의 보편적 권리, 즉 보편적 사회공동체로서의 국가관은 국가와 사회의 삶이 일치한 보편적 공동체라는 고대적 국가관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은 마르크스에게서 고대로의 회귀라는 추상적 방식이 아니라, 이미 근대에 형성된 '보편적으로 생산하고 교류하는 개인'의 존재를 인정한 토대 위에서 그러한 '개인을 사회화'하고 그러한 사회적 결사를 보편적으로 형성함으로써 실현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402)

이미 1844년 「유태인 문제에 대하여」에서 그는 자유주의적 정치를 비판하는 가운데 인간해방의 정당한 근거가 정치적 혁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힘을 사회적 힘으로 조직화'하는데 있다는 그의 관점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언급하였다.

모든 해방은 인간의 세계, 그리고 인간이 인간 자신에 대해 가지는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다. 정치적 해방은 다만 인간을 한편으로는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즉 이기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의 시민으로 즉 도덕적 인격으로 환원하였다.…… 현실적인 개인은 추상적인 시민을 자기 자신으로 되찾아야 하며, 현실적인 생활 속에 있는, 개인적인 활동을 영위하는,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 속에 있는 한 개인을 뜻하는 유적존재species-being로 되어야만 한다. 인간은 그 자신의 힘을 사회적인

401) 비록 마르크스가 명시적으로 권력 개념을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자유주의의 국가권력이 인위적인 도구이며 수단이라는 점을 비판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와는 구분되는 자발적이고 연대적인 권력을 보편적인 권리으로 이해했다는 점에서, 그는 분명히 이러한 두 가지 의미로 권력을 구분하여 논의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르크스에게서 나타나는 '도구적 권리'와 '보편적 권리'의 개념적 차이는 아렌트(H. Arendt)의 권리개념 구분, 즉 강권으로서의 권리(Gewalt)과 자발적인 상호적 힘으로서의 권리(Macht)와 그 의미에 있어서 유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좀 더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지만 비록 마르크스가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언급 속에서 권리개념은 개념적으로 상이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그의 논의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권력을 논의하는 부분에서 그것은 언제나 강권을 의미하는 Gewalt로 표기되며, 새로운 사회 혹은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보편적 연대권력(혹은 보편적 연대의 힘)은 die Macht des Verkehrs selbst hätten sich als universelle로 표현되고 있다.(1844 GI: MEW 3: 35) 그러나 아렌트가 그것을 두 가지 권리개념으로 구분하였다면, 반면 마르크스는 보편적 권력을 또 하나의 권리 개념으로 개념화하기보다는 이를 '연대' 혹은 '질서'라는 용어로 논의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두 사람 모두 궁극적인 정치공동체의 형성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렌트는 이를 '정치적인 것으로의 상승'으로 표현하고 마르크스는 이를 '정치적 국가의 지향'으로 표현했던 것은 이러한 개념화의 차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02) 즉 마르크스는 인간이 사회적 존재인 한, 사회 안에서만 자신의 인간성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자기실현이란 물질적 생활과 일치하는 바의 전인적 개인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발전 및 모든 자연상태로부터의 탈피에 상용한다. 그리고 노동이 자기실현으로 변화하고 지금까지 계약받아왔던 교류들이 개인들 자신의 교류로 변화하는 것도 거기에 상용한다.(1844 GI: MEW 3: 68)"

힘으로 인식해야 하고, 이 힘을 조직함으로써 정치적인 힘의 형태로 사회적인 힘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분리하는 일을 중지시켜야만 한다. 이러한 일이 성취될 때만이 인간적 해방은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MEW 1: 354)

즉 마르크스는 정치권력의 획득만으로 나타나는 '정치적 해방'과 구별되는 인간의 보편적 해방, 즉 '인간적 해방'이란 "인간이 자기 자신의 '고유한 힘'을 사회적 힘으로 인식하고 조직했을 때, 따라서 사회적 힘이 더 이상 정치적 힘의 형태로 분리되지 않을 때에(MEW 1: 356)" 가능한 것이라 인식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에게서 진정한 권력의 정당한 근거는 인간 자신들의 사회적 결사체를 형성함으로써 그것이 하나의 정치적 자치질서로 합일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이가 그에게서 당면 사회의 사회적 권리와 진정한 사회적 권리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권리의 정당한 근거에 대한 그의 관점을 엿볼 수 있다. 1846년 「독일이데올로기」에서 그는 정치적 권리와 구분되는 진정한 사회적 권리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사회적 권리social power, 즉 노동분업 내에서 규정된 다양한 개인의 협업에 의해 서 발생한 배가된 생산력은 협업이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들에게 그들의 고유하고 통일된 힘으로서가 아니라not as their own united power(Macht) 그들 외부에 현존하는 외적인 권리(Gewalt)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권리이란 개인들로서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며 따라서 개인들이 더 이상 그것을 지배할 수 없다.(1846 GI: 53)*

이 구절에서 나타나듯이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영위되는 '하나의 외적인 힘으로서의 권리'와 구분되는 진정한 사회적 권력을 '개인들 스스로의 고유하고 통일된 권리'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사회적 권리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제하는 외적인 권리이라고 비판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마르크스에게서 정당한 권리이란 반드시 개인 스스로의 자유의지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그 결과 그 스스로에게 속한 힘이 되어야 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사회적 권리가 개인들에게 외적인 권리으로 드러남으로써 그들에게 통일된 권리으로서 드러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그에게서 정당한 권리이란 개인들에게 고유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서로의 힘이 통일된 그러한 것임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에게서 파악된 진정한 사회적 권리은 개인 스스로가 의식적으로 통제하고 자발적으로 개입하며 지배할 수 있는 고유하고 통일된 사회적 연대권력임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마르크스는 이러한 사회관계의 근본적 재편을 위한 과정에서 정치적 운동이 가지

는 역할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1871년 마르크스가 인터내셔널의 미 연방회의 서기 프리드리히 볼테(Friedrich Bolte)에게 쓴 편지에서 순수한 경제적 투쟁과 정치운동, 그리고 사회적 투쟁이 잘 구별되어 나타나고 있다.

노동자계급의 정치운동은 물론 자기 계급을 위한 정치권력의 획득을 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경제적인 투쟁을 통해 생성되는 노동자계급의 조직이 어느 정도 사전에 발전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노동자계급이 지배계급에 대항하는 하나의 '계급'으로서 나타나고, 그들을 밖으로부터의 압력으로 강제하는 모든 운동은 정치운동인 것입니다. 예컨대 특정 공장 혹은 특정 직업에서 개별적인 자본가들로부터 스트라이크 등을 통해 좀더 짧은 근무일을 요구하게 되는 시도는 순수한 경제운동입니다. 하지만 8시간 노동의 '법'을 통과시키려는 운동은 '정치운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 노동자들의 개별적인 경제운동으로부터 모든 곳에 정치운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사회적 강제력을 일반적으로 소유하는 형태의 계급의 운동인 것입니다. 이러한 운동이 어느 정도의 사전에 조직된 조직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조직을 발전시키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1871년 11월 23일 Marx to Bolte, Marx/Engels, Letters to Americans (New York, 1953) pp. 93-4)

이렇게 마르크스는 노동조합의 활동이나 경제적 문제에 관련한 스트라이크 등의 경제적 투쟁을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뜨를레티아의 정치적 조직화를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가 앞서의 겸토에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사회적 관계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정치권력의 획득은 진정한 사회변혁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보다 근본적인 권리의 정당성은 그것이 사회 전체의 변화, 사회적 관계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에서 찾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르크스는 사회혁명이 인간의 본질을 일면적 방식으로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전면적인 방식으로 극복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마르크스의 정치관에 대한 기준의 일반적인 해석은 앞서 논문의 서두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그에게서 논의된 사회혁명의 목적이 정치혁명을 통한 정치권력의 장악에 있다고 파악해 왔었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1848년의 「공산당 선언」은 1848년 6월 혁명의 이론적 예전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 「공산당 선언」에서 논의된 혁명의 상은 1848년의 혁명과는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그는 폭력적인 정권의 탈취보다는 장기적인 사회관계 전체의 변화를 근본적인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에게서 정치적 운동의 형태란 장기적인 사회 조직화 작업의 일환으로 고려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그가 이후 1871년 콤뮨의 실패를 노동계급의 실패나 사회주의 이념의 실

패로 보지 않았다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는 콤뮨이 물론 현실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요소를 몇몇 보여주었던 것은 인정하고 평가하고 있지만, 파리 콤뮨이 임박했을 때에도 그 봉기에 대해 반대하였으며 그것의 본질이 민주적 급진파와 소시민에 있는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⁴⁰³⁾

오히려 1848년 이후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가 혁명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과정을 필요로 한다고 여겼다(MEW 8: 598). 이러한 생각을 토대로 그는 영국 맘명기간 여러 혁명단체나 음모단체와는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조급한 봉기의 어떠한 시도도 반대하였던 것이다. 조급한 정치적 봉기에 대한 우려는 1848년 이후 그의 많은 저술과 편지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1852년 편지에서도 마르크스는 장기간 지속될 것 같은 현재의 경제적 번영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⁴⁰⁴⁾ 이러한 모든 정황 중에는 마르크스가 단순한 정치혁명, 단순한 정치권력의 장악이 갖는 한계에 대해 분명히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물론 1858년 러시아의 사태전전에 대한 마르크스의 궁정적 언급이나 1862년 독일 정치의 급진화를 주목하면서 마르크스는 혁명의 현실적 가능성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1862년 마르크스는 「쿠겔만에게 보낸 편지」에서 "독일의 상황은 제가 1850년이래 확신해 왔던 혁명에 분명히 접근해가고 있습니다. 1848-9년에 범했던 어리석음이 혁명의 제 1막에서 다시 반복될 가능성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겠습니까? 그것이 세계사의 흐름이고 또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밖에"라고 언급하였다.⁴⁰⁵⁾ 또한 1863년 프리시아 정치의 위기에서 마르크스는 '혁명이 임박해 있네'라고 언급하였으며 1868년의 스페인 혁명, 1877년 러시아 터키 전쟁이후 폐쇄한 러시아 내부에서의 상황에서 마르크스는 현실적으로 혁명을 기대하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즉 마르크스에게서 제시된 정당한 정치의 근거가 사회혁명을 통한 사회관계 자체의 재편에 놓여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는 1848년 이후 오랜 맘명생활을 해 가는 동안 당시의 상황에서 그 자신의 근본적 주장이었던 사회혁명의 구체적 형태를 조직화해내는 일과 당시에 발생한 수많은 정치적 봉기 사이에서, 하나의 일관된 관점과 실천을 지속해 나아가기보다는 자신의 힘에 대한 절망과 혁명적 봉기에 대한 희망의 교차로에 놓여 있었던 것

403) 마르크스에 따르면, 1848년 루이 불랑에 의해 주도된 6월 혁명과 1871년 콤뮨간의 주요한 차이점은 "1848년에는 하층 중간계급이 부르조아계급에 가담하여 노동자들을 압제하는데 협조했다면, 코뮌 통치기간에는 이들이 부르조아 계급에 반대하고 노동자들에게 가담하였다는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그렇다고 해서 콤뮨의 사회적 토대가 성숙된 노동자계급의 것이라고 평가한 것은 아니었다.

404) Marx to Cluss, 1852년 4월 22일 (MEW 28: 515)

405) Marx to Kugelmann, 1862년 12월 28일

같다. 물론 그는 이 시기에도 라살레의 국가주의적 개혁이나 바쿠닌 등 파격파의 음모적 형태의 봉기 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1874년에 마르크스는 바쿠닌의 「국가사회주의와 무정부상태」나 「미래사회질서를 위한 원리적 기초」 등에서 그가 강력한 사회통제를 주장하는데 대해 비판하고 있다. 즉 바쿠닌은 무정부주의적 관점에서 국가 폐지를 논의하고 있으면서도 국가의 폐기와 별개로 정치권력과 정치제도가 존속하여 모든 사회분야 전체를 통제하여야 한다는데 대해 그의 무정부주의적 공산주의의 내용은 '병영 공산주의'로 유지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MEW 18: 601) 그러므로 비록 그가 1848년 이후 정치적 혁명이나 봉기와는 구분되는 진정한 사회혁명의 구체적 형태를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가지는 못했지만, 사회적 삶의 보편성과 관련되지 않은 일체의 정치적 통제에 대해 비판하고 있었다는 점은 일관되게 그의 근본적인 관점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마르크스에게서 진정한 '정치'의 정당한 근거는 그것이 사회적 삶의 보편성과 관련된 것이어야만 하며, 자신의 사회적 힘과 정치적 힘이 분리되지 않고 본원적으로 합일되는 새로운 사회관계의 질서 속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⁴⁰⁶⁾ 즉 정치권력을 실질적으로 사회화하고 기존 사회를 진정한 사회적 힘과 교류로 조직화하는 방향이었다고 추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주의적 전통에서 국가란 동의를 결집하는 과정으로 작동하는 것인데 반해서, 마르크스에게서 사회화는 사회의 경제구조가 점차 동질화되어가면서 사회 자체가 이와 동등한 정치적 기능을 제 흡수하는 지점에서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마르크스는 자유주의적 국가관에 대해 그것이 단지 물리력의 독점체이며, 따라서 그러한 국가관 속에서 권력이란 태인에 대한 특정 인간들의 지배관계로서 사회를 통합시키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에게서 중요한 것은 국가라는 기존의 정치적 권력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만드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립된 사적 개인들로 원자화된 사회를 하나의 실질적인 연대적 공동체로 만드는데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르크스에게서 새로운 정치의 정당한 근거는 결코 '권력사용의 감소'나 '권력의 합리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영역과 사회영역사이의 분리 자체를 강조시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마르크스에게서 '국가의 지양(Aufheben)'이 갖는 의미는 사회통합자로서 국가기능의 재 조절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거꾸로 권력 사용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질서의 형성, 즉 정치영역과 사회영역간의 분리를 해소하는 방향에서 공동적인 사회결사체의 자치질서 형성을 제안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사회적 결사체의 보편성은 사회영역과 괴리된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기존 사회의 생산활동과 소유관계에 대한 근본적 부정에서, 그리하여 새로운 사회적 가치의 신출활동과 새로운 사회적 소유관계의 형성이라는 점에서 찾아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만일 이제까지의 겸토에서와 같이 자유주의 정치의 정당성이 다만 인간의 외부로부터 부과된 것이며 그 결과 정치가 인간에 대한 통제와 강제를 그 본성으로 하는 권력 일 수밖에 없다는데 마르크스의 근본적인 비판이 놓여 있었다면, 마르크스에게서 '정치'란 새로운 연대적 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주체로서 '인간 스스로의 발전과 육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마르크스의 정치이념은 정치가 인간의 욕구와 권리를 보호하는 하나의 도구나 기술로 파악됨으로써 결국 인간에 대한 하나의 외적 권력으로 축소되어버린 근대적 정치이념에 대한 근본적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정치'를 일종의 권력이나 혹은 통제술로서가 아니라 바로 인간들간의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사회적 그룹관계로 파악함으로써 정치를 인간의 문제로 바라보고자 하였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그의 정치관은 근대 자유주의 정치사상에 대한 하나의 극복 시도였다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06) 이러한 맥락에서 채로니(U. Cerroni)는 근대 대의계 국가의 관료화과정은 사적 생활이나 권력 자체를 실질적으로 사회화하는데 성공하지 못한 점과 연관된 역사적 경향이라고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Uberto Cerroni, "Democracy and Society", *Economy and Society*, Vol. 7, no 3, 1978. p.75

碩士學位論文

碩士學位論文

代議制의 問題點과 그 補完으로서의
電子民主主義의 可能性

代議制의 問題點과 그 補完으로서의
電子民主主義의 可能性

指導教授 李 郁 漢

이 論文을 法學 碩士 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8年 12月 日

淑明女子大學校 大學院

法學科 法學專攻

劉 恩 廷

淑明女子大學校 大學院

法學科 法學專攻

劉 恩 �廷

이런 점에서 헌법 재판소는 정책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고 하겠다.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는 그 기능과의 관계에서 볼 때 체제적합성에 의해서 요청되는 필연적 귀결이라고 한다 164)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종래의 행정부, 입법부의 선거적 공무원만 국민의 대표자로 인정해오던 것에서, 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대의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할 여지가 어느 정도 발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의기관을 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확대한다고 할 때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정책결정을 한다고 해서 대의기관 즉 국민의 대표자로 인정할 경우 그 범위가 얼마만큼 확대되어야 할지, 확대되는 것이 긍정적이지만 한 것인지, 그리고 국민의 대표자인 대의기관의 권한이나 책임문제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검토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기관을 무조건 대의기관으로 파악해야 할 것을 주장해서 될 문제도 아니다. 165)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를 위한 그 과정도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오늘날 기능적인 권리분립의 측면에 있어서도, 그리고 본질적으로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사법기관이라는 점에서도 대의기관의 확대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신중한 고려가 요청된다.

제 4 절 打開策으로써의 直接民主主義적 요소의 도입

민주주의 본질에 관한 여러 가지 표현형태에도 불구하고 그 최소의 공통분모는 국가의사가 궁극적으로 국민에 의해서 결정되는 국가형태 혹은 국가의사

164) 조병률, 앞의 논문, 193쪽, 353쪽에서는 헌법재판소를 대의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다.

165) 정종섭, 앞의 논문, 282쪽.

의 최후의 정당성의 근거가 국민의 의사에 있는 국가형태라는 데에 있다. 166) 직접민주주의란 치자와 被治者의 동일성,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동일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이것은 치자와 被治者의 의사의 동일성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이미 루소의 동일성이론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이론은 이미 이론적인 기반을 잃어버리고 정당성을 상실하고 말았다. 따라서 우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생각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날 대의제의 위기와 관련하여 직접민주제적 요소를 조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대의제를 채택함은 직접민주주의제가 좋은 것인데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직접민주주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앞에서 보았다. 그러면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대의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할 수는 없는가의 문제이다.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는 그 자체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살펴볼 것이다- 대의제의 보완으로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해도 그 문제점들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여기에는 아예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와 대의제는 결합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대의제 그 자체가 완전한 것이 아닌 바, 직접민주제적 요소가 비록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긴 해도, 이것이 위에서 살펴보았던 여러 가지 대의제의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인지를 내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67)

166) 전광석, 민주주의의 실현구조와 국민투표, 고시연구(1989년 5월호), 60쪽 이하 참조.

167)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위에서 얘기한 정치제도의 대표성 결여와 참여결여를 제거하기 위해서 독일에서는 현재 기본법의 국민투표조항(Art. 29 GG)의 확대를 위한 현재의 여러 가지 요구가 주장되고 있다. 이 경우에 Art. 29 GG를 초월하여 특정한 조건하에서 국민소환(Volksbefragungen), 국민발안(Volksbegehren)과 국민투표(Volksentscheiden)에 대한 도입이 고려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 방법에 대한 역사적인 경험은 직접민주주의가 꼭 궁정적이지만은 않다. 바이마르시 대의 일곱 개의 국민발안은 차치하고서라도, 일곱 번 중에서도 국민의 찬성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한 것은 없었고, 또한 1945년 이후에도 여러 주 가운데서 몇몇의 국민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代議制는 지금까지의 발전과정에서 다양한 요구와 여러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분이익과 경험적의사의 비중증대와 국민들의 직접참여의 욕구증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代議制는 그 변화를 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대한 모색 중의 하나가 현재도 여러 나라에서 제도화되어 있고, 또 도입이 검토되고 있기도 한 直接民主主義적 요소와의 결합이다.¹⁶⁸⁾ 아래에서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다.

I. 直接民主制의 可能性 輿否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polis*)나 스위스의 주(*canton*)¹⁶⁹⁾ 또는 미국 뉴잉글

발안이 일반적으로 허가되지 않았거나 성립되지 않았다. (*Rhein-land-Pfalz* 1945; *Hessen* 1966 und 1981/82) 왜냐하면 필요한 정족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Baden-Württemberg* 1987). *Bayern* 주에서는 유일하게 "법률의 제정"을 구하는 국민발안이 받아들여지기 위하여 국민투표로 이미 투표권 있는 시민의 십분의 일이 충족되어, 투표한 사람의 과반수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지금까지 그 방법(국민투표)이 어느 정도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여왔다. (기독교파와 혼합학교의 도입, 공영방송의 존재 보장 등) 그 때문에 독일의 새로운 주들(통일된 동독주들을 말한다) 중에서 -특히 작센주는- *Bayern* 주의 규정을 모범으로 삼았고, 국민투표에 있어서 투표 정족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vgl. Art. 72 작센주 헌법 von 1992)

168) 대의제환치설, 대의제보완설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말 그대로 대의제환치설은 진정한 민주주의로서의 참여민주주의를 주장하고 대의제보충설은 시민참여를 대의제의 결합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이해한다.

169) 연방국가인 스위스국가는 위에서부터 아래로가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위로 조직되었다. 작은 단위들, 즉 공동체들과 주들의 자치행정과 사법에서 당국을 자신들이 선택하는 것으로 정한다. 스위스에는 시민공동체 혹은 교회공동체, 학교공동체 같은 특수한 공동체들이 존재하고, 공동체들의 '입법기관'은 원칙상 표결권 있는 주민들의 총회이다. 특히 작은 대부분의 지방공동체들에서는 주민들이 공동체총회에 모여서 공동체행정부를 임명하고, 이로서 민주주의는 연방에서보다 더 직접적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스위스 여성들에게는 선거 및 표결권이 없다고 하는 사실은 정치적 평등의 측면에서 하나의 시대착오로 된다. : 스위스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자세한 것

랜드의 주민총회(town meeting)와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협소하고, 인구가 적기 때문에 직접민주제가 가능했다고 하면서,¹⁷⁰⁾ 오늘날에는 지역의 광대함, 인구의 격증, 정책사항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代議制의 채택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¹⁷¹⁾, 그리하여 근대적 국민투표의 원형은 스위스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을 근거로 하는 직접민주주의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성립이 불가능함을 밝힌 바 있다. 인구나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치자와 피치자가 동일하다는 것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은 이주성 역, B. 용커, E. 구룬어 풍저, 스위스 직접민주주의, (법문사, 1996년) 참조.

170)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는 당대의 특수한 사회, 경제적 조건에 의해 이룩될 수 있었던 역사적 산물이다. 그리스민주주의가 가능했던 당대의 조건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첫째, 시민은 매우 동질적인 이해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이해의 동질성은 민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사회경제적으로 비슷한 계급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달성될 수 있었다. 당시의 민회에 참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20세 이상의 시민남자들로 국한되었다. 당시의 아테네는 자유민보다 1.5배나 많은 노예나 여자들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았다.

둘째, 이 조건은 앞의 조건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데, 정치란 곧 공동선/일반의지를 형성하는 과정이라는 인식을 시민들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시민들은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보다 공동체의 복리를 먼저 생각하여야 한다고 요청 받았다.

셋째,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는 일상생활에 대한 물두로부터 해방될 것을 요구한다. 그리스의 경제활동은 노예에 의해 영위되었다. 따라서 성인 남자들이 자신들의 직업적인 물두를 벗어나 정치에 자유롭게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넷째, 보다 멀 중요 한 것이지만 그리스사회는 정치체에 참여한 모든 성원들의 대면적 접촉을 가능케 하는 소규모사회였다. 다섯째, 뿐만 아니라 당시의 정치적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모든 성원들이 자유롭게 획득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상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직접민주제가 유지될 수 있는 것임을 상기하여야 한다. ; 이상은 안희원, "정보사회에서 참여민주주의의 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연구", 연세 대학교 석사논문, 1996년, 10쪽-12쪽 이하.

171) 투소도 여기에는 일정한 조건이 있는데, 첫째, 국가는 충분히 소규모이어야 하고, 둘째, 그 방법은 단순하여야 하며, 셋째, 재산과 계층에 있어서 상당한 평등이 요구된다. 따라서 그의 이론에 적합한 '진정한 민주주의'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고 또한 존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도 믿고 있었다.

이다. 그런데 대의민주제가 위기를 맞게 되고, 의회정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짐에 따라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지게 되었다. 그래서 대의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직접민주제적 요소의 채택을 통한 보완이 가능한지의 여부가 검토되는 것이다. 하지만 직접민주적인 제도는 독재정치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종 악용되어 왔기 때문에, 그 채택은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II. 直接民主主義에 대한 贊反論

1. 직접민주제 찬성론의 근거

직접민주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직접민주제는 다음과 같은 순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첫째로, 국민이 직접 중요한 정책결정에 참여함으로써 대의민주제의 결함을 보완하고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로, 국민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공무원들의 대응성을 높이고 의회의 부패와 무능을 어느 정도 시정, 보완 할 수 있다.

셋째로, 시민들이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중요한 input, 즉 국민에 의한 정부통제기능을 수행한다. 국가기관 상호간의 충돌로 의사결정이 안되거나, 지연된 경우에 주권자인 국민이 최종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

넷째로, 시민들에게 현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을 유도하여, 중요한 정책결정에 참여케 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정치교육을 위해 필요하다.

다섯째로, 사회적으로 민감한 현안을 국민투표¹⁷²⁾에 의해 해결함으로써 국민적 불만을 해소하고 정치적 혼란을 극복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다.

2. 직접민주제 반대론의 근거

172) 찬반론에 대해 자세한 것은 한태연, 헌법과 국민 (고시연구사, 1995년), 172-185쪽, 참조.

직접민주제를 반대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국민투표는 복잡한 사안에 대하여 단순하게 '예' 또는 '아니오'라는 대답을 요구하고, 다수결의 원리를 적용하기 위한 심의과정-토론, 설득, 타협, 조정 등이 생략되기 때문에 그 결과는 불합리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의 의사가 결코 스스로 능동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국민의 결정이란 결국은 대통령 등의 국민기관에 의한 구체적인 문제의 제기를 전제로 하고, 제기된 문제에 대한 대답의 형태로만 즉 수동적인 형태로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¹⁷³⁾

둘째로, 유권자에 대한 선동과 투표의 매수, 투개표의 부정 및 여론조작 등으로 民愚政治의 폐단을 드러낼 수 있다.

셋째로, 유권자의 정치적 무관심 때문에 기권률이 높을 경우에는 소수의 의사가 국민전체의 의사로 간주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국민대표성에 문제가 있다.

넷째로, 국민들의 일반의사에 배치되는 여론의 조작을 할 수 있으며, 나아가 다수자의 절대적 지배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으며, 여기에 독재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다섯째로, 시민들의 참가절차를 이행하고 정보제공, 조사요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고, 또한 그 절차가 지연될 뿐 아니라, 정책결정과정도 복잡해진다. 따라서 이를 도입하는 데는 그 역기능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¹⁷⁴⁾

III. 直接民主制의 具現方法

1. 국민투표 (Volksentscheid)

국민표결제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통상 논의되는 것은 현

173) 전광석, 앞의 논문, 62쪽 이하 참조.

174) 이에 관하여는 한태연, 앞의 책(각주 172), 172-185쪽 참조.

법안에 대한 국민표결제도와 법률안에 대한 국민표결제도이다.¹⁷⁵⁾ 헌법안에 대한 국민표결제도는 헌법의 제정 및 개정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확정하는 것이며, 법률안에 대한 국민표결제도는 표결의 제정 및 개정에 있어서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묻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의회에서 가결한 법률안을 국민투표에 회부시켜 확정하는批准形태와 의회가 입법상 필요에 의해 그 법안의 원칙에 대해 사전에 국민의 의사를 묻는 상의적인 형태가 있다. 여기에는 다시 이러한 표결이 강제적으로 실시되는 경우와 임의적으로 실시되는 경우 또는 법률안의 성질에 따라 양자가 혼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 외에도 조약과 외교협정 등 국제법적 사안에 대한 것과 중요한 정책을 사전에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결정하는 국민표결제도가 있다.

이와 구별해야 될 개념으로 풀레비스지트(Plebisit)와 국민거부제도가 있다.¹⁷⁶⁾ 뒤에서 살펴볼 것이지만 국민거부제도는 의회에서 법률안이 가결된 후에 일정수의 의원이나 국민이 그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공포를 연기하고, 특별히 반대의사가 없으면 가결된 법률안은 확정된다는 점에서, 법률안에 대한 국민표결제도와 구별된다.¹⁷⁷⁾

2. 국민발안(Volksinitiative)

국민발안제도는 헌법의 개정, 법률의 제정, 개정에 있어서 그 안을 국민이 직접 제안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¹⁷⁸⁾ 통상 거론되고 있는 것은 법률안에 대한

국민발안제도이다. 법률안을 제안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국민이 직접 법률안의 조문까지 작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와 국민이 의회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의 법률안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¹⁷⁹⁾ 일단 법률안이 제안되면 이는 국민투표에 회부되는데 그 과정에서 회부되기 전 의회가 개입하는 방법도 있다.¹⁸⁰⁾ 즉 의회가 제안된 법률안에 대해 수정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와 부결권 고안을 함께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미국의 일부 주, 스위스, 독일 등에서 채택되고 있을 뿐이다.

특히 국민발안제도에 있어서 국민이 법률안 또는 국가정책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작성하여 국민투표로 확정하는 것을 국민입법제라고 한다.¹⁸¹⁾

3. 국민소환(Recall)

국민소환제도는 국민파면제도라고도 불리는 것으로서 국민의 의사에 따라 공직자를 임기만료 전에 공직에서 해직시키는 제도이다.¹⁸²⁾ 이 제도는 일정한 법률절차에 의한 일정수의 유권자의 요구에 따라 공직자가 직접 파면되는 효과를 가진다. 이것은 보통 대의기관에 행해지지만 국민의 대표자가 아닌 임명공직자에 대하여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이 소환제도가 의원전체에 대한 것일 때는 의회해산, 대통령제에서의 대통령에 대한 것일 때는 정부해산의 형태가 될 것이다. 이러한 국민소환제도는 미국에서는 recall이라는 명칭으로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¹⁸³⁾

175) 스위스의 국민투표는 의무적 국민투표와 선택적 국민투표가 있다. 의무적 국민투표는 헌법개정안, 중요한 국가조약체결, 헌법사항에 관한 조치 등이 주요 대상이고, 선택적 국민투표는 일반법률, 일반적 성격을 띠는 연방의 결정, 조약, 헌법에 기초한 연방의 특별조치 등이다.

176) 풀레비스지트는 통치자가 이미 결정하고 확정시킨 사안에 대하여 국민의 의사를 묻거나 새로이 성립된 통치질서의 정당성이나 통치자의 계속적인 통치여부에 관하여 신임을 묻는 것이다. 자세한 논의는 한태연, 앞의 논문(각주 71), 18쪽 이하, 참조.

177) 한태연, 앞의 논문(각주 71), 16쪽 이하.

178) 김철수, 비교헌법론(상), 158쪽 이하 : 권영성, 헌법학원론, 595쪽 이하.

179) 임도빈, 스위스식 직접민주주의(1)국민제안, 지방자치(1995년, 8월호), 참조.

180) 중요한 것은 의회가 부결하든지 찬성하든지 국민투표에 부해진다는 점이다. (스위 임도빈, 스위스식 직접민주주의에서)

181)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하), 103쪽 이하 참조.

182) 이 제도는 미국의 여러 주에서 다양하게 채택되고 있다. 미국의 국민소환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피선공무원의 해직 2. 임명관리의 해직 3. 판사의 해직 4. 판결의 recall

5. 권고적 소환 등 ; 윤명선, 앞의 논문, 102쪽 참조.

183) 김철수, 비교헌법론(상), 159쪽, : 권영성 헌법학원론, 595쪽, 참조.

4. 국민거부(voto)

법률의 제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소관업무지만 일정한 경우 국민거부라는 형태의 개입이 인정된다. 예컨대 대표자에 의해 의결된 법률이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수의 시민들 즉 국민에 의해 반대투표에 부의되는 것이다. 국민거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되지만, 이 경우에 기권자들은 법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국민거부에 의해서 국회가 의결한 법률은 그 시행이 유보되면서 국민투표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이때 이러한 국민투표에서 다수의 등록 유권자가 법률을 거부한다면 부결은 확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거부제도는 자유민주국가의 헌법상 입법권의 최종적인 국회귀속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는 거의 인정되지 않고 있다.¹⁸⁴⁾

5. 신임투표(인민투표:plebiscite, plebisxit)

신임투표는 어의상 로마평민(plebs)의 의결(scitum)로서 국민이 권력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인 선거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즉 신임투표는 People주권의 논리적 귀결로서 널리 국민이 국가의사의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이 신임투표에 의하여 표시된 국민의 의사란 어떤 결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국가의 의사가 그런 방향으로 결정되기를 희망한다는 국가의사결정의 희망조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신임투표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된다.

첫째, 영토의 병합이나 변경 등에 관해서 국민 또는 그 주민의 투표로서 그 귀속을 결정하는 경우이며, 둘째, 새로 권력을 장악한 지배자가 그 권력의 정통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경우이다. ¹⁸⁵⁾이 틀레비스지트는 평상시가 아

184) 최봉기, 직접민주주의와 주민투표제도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논총 제 13집, 151쪽.

185) 히틀러의 영토 하에 나치스에 의한 틀레비시트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국제연맹탈퇴에 대한 틀레비시트(1933. 11.12. 찬성: 93.4%)

2. 총통취임에 대한 틀레비시트(1934. 8.19. 찬성: 88.1%)

3. 독일, 오스트리아 합병에 대한 틀레비시트 (1930. 4.10. 찬성: 99.0%) :최봉기, 앞의

닌 격동적이며, 비상적인 정치적 시기에 때때로 등장하는 임기응변적 성격을 지니며, 대개는 그 제안자를 위한 독재의 수단으로 이용되기 쉽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틀레비스지트에 의한 독재를 인민투표적 독재라고 부른다.

이와 같이 조직되지 못한 대중심리를 억이용하여 국민의 이름으로 입헌적 제한을 파괴하는 틀레비시트적 남용은 과시증을 체험한 현대사가 생생하게 실증해 주었다. 그것은 直接民主主義의 실현을 위한 국민의 권리로서보다는 독재적 지도자의 인격에 대한 직접적인 신임투표로서 권력보강을 위해 자의적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¹⁸⁶⁾

6. 이상에 대한 도입가능여부 검토

위에서 설명한 예들처럼 이제 구속력 있도록, 국민발안과 국민투표를 헌법으로 수용하는 것이 정당한가. 이 질문은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따라서 정답이 정해져야 할 것이다. 과연 직접민주주의의 어떠한 절차가 의회제도를 오히려 약화 혹은 강화시킬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¹⁸⁷⁾

논문, 152쪽, 각주 17번.

186) 이국제, 정치학(서울:법문사, 1993), 469쪽.

187) 독일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논의되고 있다. : 절대적인 것으로 다음과 같은 요구가 주어질 수 있는데, 그것은 국민이 만든 법이 의회가 만든 법보다 더 높은 효력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회는 언제든지 국민의 결정을 바꾸거나 수정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국민이 만든 법은 헌법과 일치하여야 하며, 특히 헌법을 존중하여야 하고, 역시 헌법 하에 모든 범위가 들어가야 한다. 필연적으로 모든 국민투표는 사실문제의 탈다양화(획일화), 탈정치화를 낳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결과를 번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은 일단 결정하면, 궁극적으로 정치적인 결과에 대하여 모두가 책임 있으며, 이 말은 결국 아무도 책임이 없다는 것이 된다. 아웃든 한가지는 오랫동안 부정되었다. 합법성과 권위를 대의제를 통한 국민의 민주적 의사형성과 참여를 통하여 마찬가지로 강화하고, 그의 통합적인 기능을 더욱 더 유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이런 저런 개별 규정을 수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목표에서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그것은 개개인의 방관자로부터 사회적인 참여 국가로, 투표로부터 공동체정민주주의라는 목표를 가지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미 HELMUT SIMON은 "절대왕정에서 민주주의"로의 변화보다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왜

오늘날의 대의제도는 직접민주적 요소가 공존하는 상용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바로 대의제도의 현대적 유형이다. 행정부에 의한 의회해산제도, 법률안의 국민발안 내지 국민투표제도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제도, 국가원수의 국민에 의한 직접선거제도, 대의기관의 국민소환제도 등이 대의제도에 입각한 현대국가의 통치구조에서 자주 나타나는 직접민주제 요소이다.¹⁸⁸⁾

그러나, 결합론에 대하여는 이론적으로 볼 때 잘못된 것이라는 비난이 있다. 직접민주제의 이와 같은 요소들을 代議制와 결합시키면 自由委任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는 주장 등이다.¹⁸⁹⁾

결합론이 제기하고 있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는 철저한 형태로의 직접민주제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곧 결합론에 제시되어 있는 직접민주제적인 제도가 국민의 자기지배 내지 자기결정을 그대로 구체화시킨 것이라는 점이다. 국민표결제도나 국민발안제도는 이미 그 자체로 대의기관의 존재를 상정하고 있으며, 대의기관의 개입을 인정하고, 국민소환의 경우에도 自由委任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결합문제에 대하여는 직접민주제적인 제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로, 국민입법제는 대의기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代議制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국민입법제는 代議制와 결합될 수 없을 것이다.¹⁹⁰⁾

둘째로, 국민소환의 경우는 국민이 임의적으로 수시로 소환한다면 이는 곧

다면 이러한 변화를 향한 요구는 최근에 증가하는 대정당 또는 경제적인 이익에 있어서는 거의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시민의 무력감과 그 경험으로부터 발생하였다. 그런 한도에 있어서 독일기본법이 직접민주주의의 모든 형태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직 시대에 합치하는 것인지, 혹은 오히려 유용한 것보다는 유해한 것인 지의 문제를 우선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188)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800쪽 참조.

189) 한태연, 앞의 논문(각주 71), 148쪽.

190)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하), 103쪽.

명령적 위임을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대표자에게 임기 중 自由委任에 기초한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극히 예외적이고 엄격한 여건을 갖춘 경우에만 국민소환을 인정하는 것은 代議原理를 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¹⁹¹⁾도 있으나 엄격한 기준을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민소환이라는 것이 강제위임을 전제로 하고 또 강제위임은 代議制의 自由委任과 배척관계에 있는 것인가 때문에 문제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다.

나머지의 국민발안이나 국민표결제도는 이미 헌법안이나 법률안, 국가정책안이 대의기관의 주도 아래 완성된 상태에 있으며, 국민에게는 추상적인 선택권과 제안권, 가부결정권만 주어진 것에 불과하다. 오늘날과 같이 다원화된 사회에 있어서는 사실상 그 의미를 찾기가 힘들다. 따라서 이것은 이미 직접민주제가 아닌 代議制 안으로 변질되어 들어온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¹⁹²⁾

代議制와 직접민주제는 원리적으로 보면 전혀 결합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양자의 본질적 요소를 과과하지 않는 한 두 제도는 결합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제도의 채택에 있어서든지 이론적 근거와 함께 실제적 타당성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장, 단점과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나라마다 다르게 고려되어야 할 방식이 있을 것이지 절대적으로 좋거나 가장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¹⁹³⁾

191) 정종섭, 앞의 논문, 250쪽.

192) 허영, 위의 책, 103쪽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193) 독일에서도 기본법에 직접민주주의 형태를 도입하는 것에 관한 논의가 1992년 5월 14일의 제 6차 회의에서 시작되었다. 거기서 기본법의 의회대표제적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결정은 그 결정이 원칙적으로 옮고 신뢰할 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일치된 의견이기 때문에 문제시되지 않았고, 견해의 차이는 단지 주어진 의회대표제적 민주주의가 직접민주주의의 요소, 무엇보다도 국민발안(Volksinitiative), 국민청원(Volksbegehren), 국민표결(Volksentscheid)을 통하여 보완될 수 있고 보완되어야 하는가에 있었다. 결론은 직접민주주의의 다른 형태를 기본법에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도달했다.

직접민주주의 도입찬성의 근거는 적극적인 정치참여의사에 대한 국민의 의지가 여

중요한 것은 代議制와 직접민주제적인 요소와의 결합은 어디까지나 제도의 결합이지, 代議原理와 直接民主主義原理(동일성원리)가 결합된 것은 아니다.

7. 헌법 제130조 제2항의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표결

우리나라는 헌법 제 72조에서 중요정책에 대한 선택적 국민투표부의권을 규정하고 있고, 130조 2항에서는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표결을 규정하고 있다. 제 130조 제 2항의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간단히 살펴보면,¹⁹⁴⁾ 우리

러 시민운동을 통하여 분출되어 있고,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국민이 증가일로에 있는 가운데 이제 이것을 국민이 더이상 기존 정당에 의하여 충분히 대변되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는 충분한 징표로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려는 국민에게 국민발안, 국민표결, 국민청원 등의 직접적인 참여형태를 생각할 수 있다. 직접적인 국민참여의 이러한 형태는 의회적 대표제도를 문제삼지 않고 참여적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킨다. 그리고 정치혐오나 정당혐오현상을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직접민주주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바이마르시대에 비록 상대적으로 몇 개 안되는 직접민주주의적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의회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적 결정가능성에 의해 끊임없이 압박을 받아 왔고, 이것이 결정적으로 의회민주주의의 약화에 기여하였다. 간접적인 의회입법에 대한 직접적인 국민입법은 더욱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의회는 단지 몇 가지 중요한 결정만 하는 추세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결정하기 어렵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있어서 국민투표가 의회에게 책임으로부터의 도피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의회의 결정능력과 책임감이 저해될 수 있다. 그리고 국민투표는 다원적 사회와 민주주의에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단지 찬성과 반대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투표는 정치적으로 적극적인 소수나 잘 조직된 특수이익의 대변인들에게 그들의 세력을 연방차원에서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도구를 부여하게 된다. 그리고 정치혐오나 정당혐오현상을 국민투표가 극복케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국민을 중요한 정치영역에서 배제하는 것처럼 보임으로써 더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부추길 수 있고, 정당도 이 방법(국민투표)을 사용하기 쉬워지고, 의회는 더욱 의회적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국민투표를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에서 책임으로부터의 도피가 역시 우려된다. : BT-Drucks.12/6000,Bericht der Gemeinsamen Verfassungskommission. ;김상진, 독일기본법과 직접민주주의의 재론,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1995년 제 6권 제 1호), 205-223쪽 참조.

194) 자세한 내용은 오태현, 헌법개정절차의 문제점, 안암법학 (1994년 8월), 181-201쪽 참조.

나라 현행헌법은 유형적으로 볼 때, 성문, 경성헌법에 속하기 때문에 그 개정방법이나 절차가 일반법률의 개정보다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다. 즉, 헌법개정의 방법을 2단계로 정해서,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1)우선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은 다음, 2)국민투표에 불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하도록 되어 있다. (제 128조 내지 130조) 이같은 2단계의 개헌방법은 어느 의미에서는 루소의 국민주권사상과 시에예스의 사상이 함께 받아들여진 것으로서 1)의 경우는 시에예스의 사상이, 2)의 경우는 루소의 헌법철학이 각각 그 이론적인 바탕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국민투표로 헌법개정을 확정짓는 방법은 국민주권사상에 충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국민투표적 정당성'을 이유로 더 쉽게 헌법이 규범적, 제도적 항구성이 침해될 수 있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또 우리 헌법은 독일기본법¹⁹⁵⁾, 프랑스헌법¹⁹⁶⁾, 이태리헌법¹⁹⁷⁾ 등과는 달리 개헌의 한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마땅히 헌법의 내재적 한계에 대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만, 헌법전문, 민주공화국, 국민주권주의 등 개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헌법조항을 일일이 열거하는 견해도 있다.¹⁹⁸⁾ 분명한 것은 헌법개정이 현행헌법의 근본정신(정의사회구현, 통일지향, 자유주의 등)과 정치제도(민주주의 권리분립주의, 범치주의 등)를 무시한 개헌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헌법은 제 128조 2항에서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의 효력을 제한해서 그 개정 당시의 대통령은 효력이 없도록 하고 있지만, 이것은 개헌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개헌의 효력만을 일부 제한하는 이

195) 독일기본법 제 79조 제 3항에 의하면, 연방제도, 지방국(주)의 연방입법절차에의 참여권(즉, 연방참사원의 입법절차참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기초정신, 민주주의원칙, 범치국가제도, 사회국가실현 등에 대한 헌법규정을 침해하는 개헌은 무효다.

196) 프랑스 헌법 제 89조 5항은 공화국 형태를 헌법개정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197) 이태리헌법 제 137조는 공화국 형태를 헌법개정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198) 김철수, 헌법학개론, 44쪽이하.

른바 개헌효력의 한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¹⁹⁹⁾

8.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부의권의 헌법이론적 위치

여기서는 특별히 헌법 72조의 국가정책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가부의 국민 의사를 묻는 국민투표 부의권을 살펴보자 한다. 규범적으로 민주주의가 결코 여론정치가 될 수 없는 이유는 통계적 숫자로서 나타나는 여론은 그것이 아무리 다수일지라도 개개 국민의사의 집합일 뿐 대의기관의 의사에 부여되어 있는 것과 같은 국민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민주주의적 권위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민참여운동 등도 우리나라에서 제도정치권의 토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정치의 다른 한 핵을 형성하게 된 재야운동도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공직의 권리와 더불어 공직의 책임이 강조되고 또 이것이 선거의 형태로 주기적인 정당성의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규범적 요소로서 권리와 책임 그리고 비규범적 요소로서 정치문화 및 헌법문화를 기본적인 틀로 갖는 민주주의 국가형태에서 국민투표제도는 대의기관이 갖는 문제제기권과 결정권 중 후자를 국민에게 다시 맡김으로써 동시에 책임의 주체를 변경하는 행위이다. 대의기관은 일정 사안에 접하여 스스로의 결정능력이 없을 때 혹은 자신이 결정할 내용의 정당성에 대해 확고한 판단을 가질 수 없을 경우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민에게 직접 의견을 물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다원화된 사회에서 국민개개인의 관심사를 대의기관이 적절하게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국민투표제도가 갖는 궁정적 측면이 실현되기 위한 전제조건들이 있다.²⁰⁰⁾

첫째, 국민투표는 대의기관에서 현안의 문제가 진지하게 토의된 후에도 결정에 이를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여전히 민주주의의 원칙적인 형태는 대의제도이고, 국민투표제도는 예외적인 해결방안이라

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²⁰¹⁾

둘째,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한 문제의 제기가 명백한 형태로 표현되어야 한다. 국민투표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다른 규정이 있지 않는 한 사항결정을 위한 절차이지 인적 구성원에 대한 정당성의 확인절차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을 위하여는 선거,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탄핵절차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셋째, 국민투표에 의한 결정에는 부의된 사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교환의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국민투표의 제도적 특성상 제기된 문제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 만을 국민으로부터 유도하도록 문제가 상징적으로 단순화하여 제기된다. 따라서 찬성과 반대의 선택 자체가 무수한 해석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갖는다.

따라서 우리국민투표법 제 26조에서 국민투표에 대한 찬반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국민으로 하여금 국민투표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을 해치는 조항이라고 한다.²⁰²⁾ 위에서 우리는 헌법 72조가 규정하는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을 해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살펴보았다. 현실과 관련하여 국민투표가 신임투표로서 헌법상 가능한가의 문제와 일부에서 논의되는 국정조사형 국민투표에 대한 평가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²⁰³⁾ 신임투표형 국민투표

201) 프랑스헌법 제 11조에서는 국민투표의 실시는 반드시 국회기간 중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국민투표제도의 대의민주주의에서의 보충성을 뒷받침하는 -그 실효성이 의심스럽긴 하지만- 최소한의 제도적 방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투표제도가 대의기관에서의 협상과 타협을 통한 국민의사 발견이라는 복잡한 민주주의 절차 대신 시대의 분위기나 조작을 통하여 국민의 의사로 승화시키려는 것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 또한 선거를 통하여 국민이 소수당에 부여한 다수당에 대한 통제구조를 우회하는 방편이 될 수도 있다.

202) 최근 이 규정에 대한 개정의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203) 우리 헌정사에서 신임투표적인 성격을 가장 강하게 가졌던 것이 1975년 2월 12일의 국민투표의 실시가 유신헌법 49조의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볼일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 선례가 있다.

199)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95쪽.

200) 전광석, 앞의 논문, 65쪽 참조.

의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렵고, 역시 국정조사형 국민투표 역시 위험한 것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보충성을 포기하고, 직접민주주의로 대체할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 5 장 代議制의 補完策으로서의 電子民主主義에 대한 檢討

제 1 절 電子民主主義의 意義와 様相

현대의 정보화 사회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음성, 문자, 화상, 동화상의 다양한 형태로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초고속 통신망의 시대를 열어 놓았다. 유권자들은 정치가와 PC통신, 케이블 TV,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고, 또 온라인 토론회나 선거 뿐 아니라 온라인 투표를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정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도 있게 된다. 이처럼 각종 통신망을 통한 直接民主主義를 총괄해서 표현하는 용어가 바로 電子民主主義이다.²⁰⁴⁾ 컴퓨터매개통신이 전자민주주의를 실현해 낼 수 있다는 기재는 컴퓨터 매개기술의 발달로 인한 풍부한 저장 및 정보용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정보가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으며, 쌍방향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일반개인이 직접 정치참여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또한 단순히 투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電子民主主義는 기존의 民主主義를 구분하는 형식 즉 間接民主主義 혹은 直接民主主義 이외의 새로운 다른 형태의 民主主義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電子民主主義는 民主主義를 실현하는 통로로 전자적인 방법을 매개로 할뿐이다. 통상적으로 電子民主主義의 범주 내에서 언급되는 것으로, 정보제공형 전자민주주의와 투표형 전자민주주의, 그리고 대화형 전자민주주의로 구분하지만,²⁰⁵⁾ 보다 올바른 의미에서의 電子民主主義는 대화형-쌍방향성의 의사소통을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의 모형이라고

204) 정동욱, 전자민주주의 가능성, 월간경영법무, (1997년 11월, 제44호), 18-19쪽, 참조.

205) 권태환, 조형재 편, 정보사회와 이해 (미래미디어, 1997년), 155쪽 이하 참조; 한상희, 정보화와 현대, 49쪽에서 재인용.

할 것이다. 206)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96년 7월 PC 통신망과 인터넷을 통해 전자정당(Cyber party)을 창당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서는 電子民主主義 연구회원을 모태로 하여 정부파료, 전문기관, 일반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정치적 과정을 전자공간에서 매개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電子民主主義에 대한 논의는 정치와 법의 각 영역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電子民主主義가 무엇인지, 과연 위에서 살펴보았던 代議制의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I. 電子民主主義의 意義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電子民主主義란 TV나 컴퓨터 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에 힘입어 代議民主主義가 直接民主主義로 전환되거나 혹은 直接民主主義의 요소로 보완되는 것에 관한 여러 논의들을 말하는 것이다. 207) 또한 전자민주주의란 쌍방향적인 컴퓨터매개통신을 통해 전자투표, 일반주민과 정치, 행정지도자와의 의견교환, 정치·행정 정보의 효과적인 전송,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론장 제공 등을 실현시킴으로써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일반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실천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208)

그런데 우리나라 식으로는 간단하게 電子民主主義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영어로는 이를 표현하는 용어가 다양하다. 이 다양한 용어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電子民主主義라고 이해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전자민주주의는 또한 먼 거리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해서 Teledemocracy, 각종 기술장치를 이용해서 Technopolitics, 위성이 사용된다고 해서 Satelite Politics, 실내에서 할 수 있다 하여 Intra-polling이라고도 표현된다.

206) 한상희, 앞의 논문, 49쪽.

207) 강경식, 전자민주주의는 우리 정치가 경쟁력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것, 국회보 (1997년 12월호), 57쪽.

208) 장병희,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 전망; 컴퓨터매개통신의 공신력을 중심으로, 연세대 언론사회문화(1996년 12월).

한국의 경우 電子民主主義에 대한 개념적 혼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는 電子民主主義에 대한 오해-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형태라고 긍정적으로만 보는 것-가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 오히려 전자민주주의로 인해 역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209) 미국에서 출발한 電子民主主義理想은 선언문의 작성자이며, 미국 헌법 수정 1조를 기초한 토마스 제퍼슨의 民主主義를 따르고 있다.

“시민정신은 자유와 질서를 신봉하는 국가 안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모델, 그리고 그 원칙 안에서 실천적인 정부를 만들 것이다.”

“우리들의 문제가 명백하게 잘못되어 갈 때마다 시민들의 훌륭한 상식이 중재하여 그것을 바로잡아 줄 것이다.”(토마스 제퍼슨)

제퍼슨이 말한 것 중에서 발췌한 이 말은 電子民主主義의 핵심이상을 잘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치과정에 시민참여의 절대적 당위성과 정부와 시민의 관계, 정부의 역할이 함축적으로 잘 나타나 있다. 이 말은 마치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의 “완전한 공화국 이상”을 대변해 주는 것 같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완전한 공화국의 시민들은 우리가 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들이고 엘리트는 거기에 다다르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러한 토마스 제퍼슨의 이상이 電子民主主義 속에서 부활하고 있는 배경에는 시민소외현상을 낳고 있는 현대 代議民主主義 체제의 심각한 위기현실이 존재하고 있다.

근대 自由民主主義 국가에서 代議民主主義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은 없었고, 기술적인 문제 이외에도 直接民主主義가 이상적인 民主主義가 아니며, 이론상으로도 불가능하며, 그 대표적인 단점인 衆愚民主主義, 대중의 선동성 등으로 인하여 代議民主主義를 실행하여 왔다. 210)

209) 원성록, 2010년 전자민주주의, 정보화저널 (1997년 6월), 128쪽~129쪽.

210) 이유진, PC통신, 인터넷과 한국의 전자민주주의 가능성에 대한 고찰, 전자민주주의 연구원 제 1회 세미나 발표논문, 1997. 4.24., 3~4쪽. 참조.

그러나, 代議民主主義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현대사회에서 위기를 맞게 되었다. 특히 대표자들이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함에 따라 대표자에 의한 권리실현이라는 代議制의 기본가정이 흔들리게 된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문제점들이 보완되지 않는 한, 대의민주제는 국민들의 이익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어렵게 되고, 그러한 보완의 방향은 間接民主主義의 방식 하에서 대표자들의 대표기능을 통제하고, 강화하든지, 아니면 直接民主主義의 방식을 도입, 보완하려는 논의가 있게 되었다.²¹¹⁾

오늘날의 컴퓨터, 인공위성, TV, 전화, 라디오 등 전자기술의 눈부신 발달 즉 매스컴 특히 텔레비전의 발달과 인터넷, 팩스 PC 통신의 발달은 直接民主主義 옹호론자들의 直接民主主義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²¹²⁾ 代議制民主主義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들이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고 국정에 전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다원화되는 사회에서 이를 대리인들이 다양하고 복잡한 국민의 요구와 의사를 굴절없이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電子民主主義는 정부와 국민간에 중간의 매개 없이 직접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또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電子民主主義가 일부 극단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당장 代議制를 대체하고 直接民主主義를 실현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代議民主主義의 단점을 보완하는데는 크게 기여하리라고 보는 학자들도 나오고 있다.²¹³⁾ 그러나 뒤에서 계속하여 살펴보겠지만 전자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나 대의민주주의 외에 이러한 것들을 대체할 새로운 민주주의의 유형이 아니다. 왜냐하면 전자민주주의는 쌍방향적인 정보나 국민이 정책결정에의 참여 등의 결과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산출할 수 있다는 등의 점에서 획기적인 것이지,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민주주의의 유

형을 제공한 것이 아니며, 다만 전자적인 방법을 매개로 하는 민주주의 실현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II. 電子民主主義의 樣相과 事例

전자민주주의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정보제공형민주주의와 투표형전자민주주의, 그리고 대화형전자민주주의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는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전자민주주의를 도입하고 있으며,²¹⁴⁾ 우리나라는 현재 어디까지 논의가 진행 중인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1. 미국

미국의 전자민주주의 프로젝트는 크게 보아서 시민 개개인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투표 중심의 참여프로젝트와 공공의 의견수렴과 대화를 중시하는 참여프로젝트로 구분된다.²¹⁵⁾ 전자의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76년의 선택”²¹⁶⁾, “드 모인의 의료투표”²¹⁷⁾, “하와이 원격투표”²¹⁸⁾, “워싱턴 주의 대안

214) 독일의 경우 정보화사회와 인터넷 등과 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상세한 것은 Walter Reese-Schäfer, "Politik und Demokratie in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Politik und Demokratie in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Diskussionsbericht), (Nomos Verlagsgesellschaft, Baden-Baden:) S.115 ff.

215) 조현숙, 정보화사회와 정치과정의 변화와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 테레데모크라시와 모델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논문, 1995년, 26쪽.

216) 뉴욕시 지역 정책의 수립을 돋기 위해 1973년에 고안된 76년의 선택은 뉴욕시의 18개 방송국에서 방송한 5편의 홍보영화로 시작되었다. 시민들은 지방신문에 게재된 지역문제에 대한 투표용지를 통해 우편으로 이를 회신하였다.

217) 1982년 12월 공공문제제단에 의해 기획된 82년도 의료투표는 의료서비스이 장단점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홍보를 담은 캠페인에 상당비율의 드 모인(아이오와주) 주민들을 끌어들였다. 시민들은 드 모인 레지스터에 인쇄된 투표용지에 의견을 적어 반송하였다.

218) 노바스코시아와 뉴 멕시코의 원격투표는 선거절차를 간편하게 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기획자들은 정확하고 믿을 수 있으면서도 안전한 전자등록/투표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은 지역관리의 선출, 국민투표, 국민발의

211) 원성목, 앞의 책, 129쪽.

212) 정동욱, 앞의 책, 20-21쪽.

213) 강경식, 앞의 책, 59쪽.

들”²¹⁹, 그리고 “큐브를 통한 어퍼 알링턴 시민대회”²²⁰ 등을 들 수 있다.

투표중심의 참여 프로젝트는 절차적인 차원에서의 토의와 결정에 이르는 거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시도되고 있는데, 아테네의 콜로세움과 같이 공동체의 구성원을 한 자리에 모아 공동체의 주요 현안을 토의,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여진 현대에 있어서,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사람을 한 장소에 모으지 않더라도 기술적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에 이르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인식이다. 분명히 정보화로 인하여 절차적인 차원에서의 民主主義는 그 이전시기에 비하여 비용이 낮아질 것이고,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다. 그러나 앞의 몇 가지 예에서 나타났듯이 구성원들의 참여는 기존의 참여율보다 훨씬 더 낮은 경우가 많았고 이에 따라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들로 인한 정통성의 문제는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있다.

공공의 의견수렴과 대화를 중시하는 참여프로젝트는 ‘알래스카 주의회 원격 회의 네트워크’²²¹, ‘버스 군 TV’²²², ‘노스캐롤라이나 오픈/네트’²²³, ‘마키의 전

권(initiative) 등을 실제로, 그리고 실시간으로 가능하게 한다. 캐나다의 노바스코시아주의 자유당은 주 수도인 헬리팩스에서 열린 정당대회에서 당원들에게 ‘비밀번호’를 주고, 전화를 이용하여 전자투표를 실시하였다. 7,000명이 넘는 노바스코시아의 당원들이 이 방법으로 투표를 하여 대표를 선출하였다. 1994년 예비선거에서 뉴奔驰코는 전화를 이용하여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였다.

219) 1974년부터 1976년까지 워싱턴주지사였던 다니엘 에반스는 주정책 전반에 대한 방향설정을 위한 한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정치지도자들 및 이익집단들로부터 지명된 시민들이 향후 정책방향을 세부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그들의 논의결과는 신문을 통한 반송우편토론 형식으로 일반시민들의 표결에 부쳐졌다. 이 프로젝트는 다양한 지역자치회의, 설문, 전화여론조사 등의 형식으로 시민참여를 호소하였다.

220)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 원너-아렉스사가 설치한 큐브시스템은 별도의 요금을 내는 가입자들에게 케이블 방송도중에 제기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누름판을 제공하였다. 중앙컴퓨터는 시청자들의 답변결과를 금방 집계해서 시청자들과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같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금방 알 수 있게 해주었다. 교통 및 도로문제 계획위원회의 설명회는 시민들로부터 상당수준의 토론과 높은 투표를 이끌어 냈다.

221) 알래스카 주의회는 미국에서 가장 큰 주인 이곳에 흩어져 사는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이 시스템은 심의 중인 법안, 수정안, 그리고 의회일정 및 위

자감연’²²⁴, 비전 20/20’²²⁵ 등이 있다.

원회활동 등에 대한 정보를 보유한 컴퓨터 통신망에 의해 작동되었다. 전자우편메시지들은 컴퓨터네트워크를 통해 주노(Juneau)에 있는 의원들에게 전달되었다. 또한 주의회 의원들은 이 네트워크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입법상의 의견을 듣고, 선거구민들과 회의를 갖고,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보좌관이나 기타의원들과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었다.

222) 펜실베니아주 리딩시에 있는 BCTV는 케이블 채널을 통해 시민들이 전화로 시. 지방 관리들이 정책이나 그 집행에 대해 토의할 수 있는 주기적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 시스템은 분할화면을 사용하여 원격대화를 하는 양측이 서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BCTV는 정기적으로 시예산 청문회와 지역계획회의를 다루었는데 1983년 이래 시사업에 대한 대부분의 공청회가 BCTV를 통해 방송되었다. 여기에서 전화로 전달된 시민들의 의견은 직접 참여한 시민의 의견과 똑같이 간주되었다.

223) 노스캐롤라이나의 오픈네트는 1979년 설치된 주 공중전기통신국이 수행하는 지속적인 프로젝트이다. 1983년부터 통신국은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이 심의중인 문제들에 대한 3시간 짜리 프로그램을 매주 제작하여 통신위성을 통해 주의 주변지역에 있는 50개가 넘는 케이블시스템에 배급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전반부에서 시청자들은 주정부관리들의 정책현안을 다루는 회의 또는 공청회를 편집되지 않은 그대로를 볼 수 있다. 그런 다음 시민들은 심의 중인 사안들에 대한 정책결정권을 갖고 있는 초청인사들에게 전화로 의견을 제시하면, 불만이나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 다음 정책결정자들을 출연시켜 문의전화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는 생방송 ‘공공문제에 대한 열린 통신망’을 방송하는 것이다.

224) 1983년 12월부터 1984년 2월 까지 소스(The Source: 미국의 상용PC 통신서비스 중의 하나)의 가입자들은 매사추세츠 주 민주당 의원인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이 창안한 ‘전자강연’에 참여할 수 있었다. 컴퓨터 회의에 그의 기조연설을 발표함으로써 마키는 미국 핵무기 정책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토론을 주도하였다. 그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의 의견 및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 자신들의 견해도 피력할 수 있었다.

225) 1990년 조지아주의 ‘연안제국’이라 불리는 Savannah와 Chatham에서는 지역의 현안에 대한 비전 20/20을 수립하였다. 여기에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자극하기 위해 이 지역 시청률 1위의 CBS지부 TV를 통해 지역 현안의 본질과 비전20/20에 관한 프라임тай임에 30분간의 쇼, 다큐멘타리, 전문가페널토론 등을 방송하였다. 시민들은 TV 쇼 중에 전화를 통해 참여할 수 있었고, 쇼가 끝난 후에는 전 지역에 걸친 24개 지역회의에 참여하였다. 다음으로 지역신문에 난 설문에 응답하도록 요구되었다. 지역회의는 자원한 토론리더에 의해 이끌어졌으며, 회의결과는 TV에 즉각 방영되었다. 시민들은 지역회의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여 비전20/20에 참여시켰다. 전자시민

공공의 의견수렴과 대화중심의 참여프로젝트는, 결정비용을 줄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투표중심의 참여프로젝트와는 대비되게, 절차에서 질적인 향상을 이를 수 있는 즉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상충되는 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기제로서 제시되고 있다. 즉 大衆民主主義 시대에 진입하면서 실현 불가능하여진 공동체 내부의 토론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성원들이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러한 의견수렴을 용이하게 만들어 의견수렴창구를 확보하고자 하는 실험들도 일방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단정 내릴 수는 없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실험들이 의견의 수렴과 대화를 촉진시키기도 하였고, 전혀 무관하기도 하였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절차상의 혁신들이 보다 많은 참여와 절차상의 문제해결을 보장하는 기제로 제시되고 있지만,²²⁶⁾ 이것은 가능성의 차원에서만 논의되는 것이고 현실 속에서 구현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로 인하여 정보화와 민주적 절차의 문제가 간단한 인과관계로 설정될 수 있는 성질의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정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민주적 절차의 형성에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거나 자동적으로 민주적 절차를 담보해 주는 수단은 되지 못한다.²²⁷⁾

회의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수단을 제공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226) 현재 미국의 예이긴 하고, 또 너무 이론 감이 없진 않지만 1)미국에서는 이미 정부의 균형예산을 촉구하고(의회를 주도하는 공화당과 클린턴의 민주당 행정부가 균형예산에 대한 의견을 달리 내세워 몇개 부서가 문을 닫은 적이 있었다) 2)주정부가 예비선거를 관리하고, 3)국민소환제도와 같이 투표행위를 통해 유권자가 직접 개입하고, 4)선출직 관리들의 재량권을 제한하고 5)유권자가 직접 대통령후보를 지명하겠다고 하고 6)의회를 제치고 의안을 토론하고 심지어 입법활동조차 하려드는 요구가 빚발치고 있다.(시민입법): 김광웅, 전자민주주의 시대를 맞아 : 미래의 정부와 청년, Cyber Party 창립기념행사 전자민주주의 새로운 가능성, 15쪽.
227) 유석진, 정보화와 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연구원 제 1차 세미나 발표논문, 1997년 4월 24일, 9-12쪽, 참고.

2. 캐나다

대의민주제에 대한 도전과 적극적인 대안 모색은 캐나다의 경우 이미 의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캐나다 의석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캐나다 개혁당은 캐나다 정치에 더 많은 直接民主主義적 요소를 도입할 것을 결의한 선언을 발표하였다. 선언의 제목은 '다이렉터 데모크라시(Direct Democracy)'이다. 선언의 요지는 국민들에게 국회의원들을 해고할 수 있는 권리(解任権)를 부여한 것이다. 물론 이 권리행사는 국회의원의 의무불이행이라는 전제조건이 붙어 있다. 선언의 골자를 살펴보면, a. 실현 가능한 연방의원소환제의 실시, b. 현행 代議制의 보완, 발전을 위한 直接民主主義 요소의 투입, c. 헌법 등 기본법의 주요이슈에 대한 국민투표, 시민발의를 통한 의사결정, d. 하원에서의 자유투표를 통한 비민주적인 의원의 축출 등이 있다.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현재의 代議民主主義 하에서 가히 혁명적인 것들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캐나다 개혁당은 이러한 것들을 電子民主主義 방식을 통해 실현하려 하고 있다. 이는 전자타운홀미팅²²⁸⁾으로서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전체의석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캐나다 개혁당의 실제적인 행동 프로그램-전자공간에서의 토의와 결정이 실제적인 효력을 지닐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²²⁹⁾

3. 우리나라의 cyber party

228) '전자타운홀 미팅'은 로스페로(Ross Perot)에 의해 주장되었는데 전자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초창기 미국민주주의 원형으로 커뮤니티 차원에서의 직접민주주의 혹은 시민참여를 실현했던 방식이었지만 이제 정보기술 혁명 속에서 다시 부활하고 있다.

"나는 매우 국민들과 한 가지 이슈를 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타운홀을 전자공간상에 만들고 싶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별로 구분될 수 있는 국민들에게 상세한 정책브리핑을 하게 될 것이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반응을 얻게 될 것이다. 물론 의회 역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Ross Perot)
229) 원성목, 앞의 책, 133쪽.